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2016 국제원산지세미나

Nov. 8, 2016

Nine Tree Convention, Seoul, Korea



목 차

SESSION 1

FTA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

: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 1	CLASSIFICATION and ORIGIN 1
	Hindsdal_WCO
발표 2	New Zealand Customs' approaches to FTAs 17
	Ku Seona_뉴질랜드세관
발표 3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방안 29
	임병호_국제원산지정보원

특 강

문화코드로 읽는 중국 소비자

51

Chen Li_국립외교원

SESSION 2

한·중 FTA 특별 세션

: 양국 C/O발급과 협정적용절차 조화

발표 1	CCPIT's A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Origin of Certificate Service Work 69
	유해연_CCPIT
발표 2	한-중 FTA 활용에 관한 기업애로 77
	송형근_한국무역협회
발표 3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통관애로지원 방안 89
	한은숙_대한상공회의소
발표 4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 (EODES) 운영과 협정적용절차 105
	정재호_관세청

SESSION 1

FTA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

: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 1 CLASSIFICATION and ORIGIN

Hindsdal_WCO



CLASSIFICATION and ORIGIN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Seoul - Korea

8 November 2016

Jørn HINDSDAL

Deputy Director

WCO - Tariff and Trade Affairs Directorate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LASSIFICATION and ORIGIN

What is classification ?

**Determination of the correct
commodity code in the
Customs Tariff**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LASSIFICATION and ORIGIN

How to classify ?

**Harmonized System (HS) +
National Customs Tariffs**

=

**6 General Interpretative Rules
(GIRs)**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LASSIFICATION and ORIGIN

GIR1	GENERAL RULE
GIR 2(a)	INCOMPLETE OR UNFINISH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GIR 2(b)	MIXTURES OR COMBINATIONS
GIR 3	TWO OR MORE HEADINGS
GIR 3(a)	MOST SPECIFIC
GIR 3(b)	ESSENTIAL CHARACTER
GIR 3(c)	LAST IN NUMERICAL ORDER
GIR 4	MOST AKIN
GIR 5(a)	SPECIAL CONTAINERS
GIR 5(b)	PACKING MATERIALS & CONTAINERS
GIR 6	SUBHEADING TEXTS, NOTES AND GIR 1 TO 5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LASSIFICATION and ORIGIN

GIR “0”

- wii ??
 - what material or substance is it made of ?
 - what is its function or use ?
 - under what form is it imported/exported ?
 - is it the only possible classification ?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LASSIFICATION and ORIGIN

PARTICULARS FURNISHED BY SHIPPER				
MARKS & NOXCONTAINERS	NO. OF PCS	DESCRIPTION OF PACKAGES AND GOODS	GROSS WEIGHT	MEASUREMENT
5437350	3	PALLETS PRINTED LABELS	4985.000 LBS 2261.196 KGS	194.442 CFT 5.506 CBM
ALLBORG LUFTHAVN AIRPORT DENMARK				
FREIGHT PREPAID EXPRESS BILL - AUTOMATIC RELEASE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7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8



CLASSIFICATION and ORIGIN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s"

How does RFID work? A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 has three parts:

- .A scanning antenna
- .A transceiver with a decoder to interpret the data
- .A transponder - the **RFID tag** - that has been programmed with information.

85.23 - 85.34 - 85.43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LASSIFICATION and ORIGIN

REQUIREMENTS

- **What is the product**
- **Clear and precise description of the product**
- **Use the classification rules**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LASSIFICATION and ORIGIN

Different views on the classification ?

Exporting country / exporter = code A

Importing country / importer = code B

Deliberate misclassification ?

Not deliberate ?

What to d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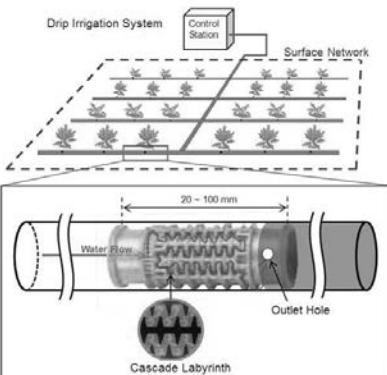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LASSIFICATION and ORIGIN

Perforated tubes of plastics

for drip irrigation system

3917.21 or 8424.90 ?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LASSIFICATION and ORIGIN

Rice – Meat - Sauce ?

"micro-ready" prepared meal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LASSIFICATION and ORIGIN

Can the WCO Secretariat assist ?

No !

HS Convention – Article 10
(settlement of disputes)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LASSIFICATION and ORIGIN

ARTICLE 10

Settlement of disputes

- 1. Any dispute between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so far as possible, be settled by negotiation between them.**
- 2. Any dispute which is not so settled shall be referr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the Harmonized System Committee which shall thereupon consider the dispute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its settlement.**
- 3.**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CLASSIFICATION and ORIGIN

EU -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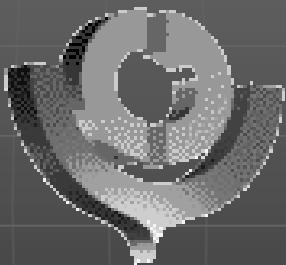
Dispute settlement – Article 28

- 1. Where disputes arise in relation to the verification procedures of Article 27 which cannot be settled between the customs authorities requesting verification and the customs authorities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is verification or where they raise a question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tocol, they shall be submitted to the Customs Committee.**
- 2. In all cases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importer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shall b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said Party.**

Copyright ©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www.wcoomd.org

WCO Tariff and Trade Affairs Directorate

Copyright®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17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SESSION 1

FTA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

: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 2 New Zealand Customs' approaches to FTAs

Ku Seona_뉴질랜드세관



New Zealand Customs' approaches to FTAs



NEW ZEALAND
CUSTOMS SERVICE
TE MANA ARAI O AOTEAROA

PROTECTING NEW ZEALAND'S BORDER

[New Zealand Government](#)

Contents

Part 1. Customs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FTAs in New Zealand

Part 2. The New Zealand- China FTA: New Zealand Customs' approaches



New Zealand Customs' role in the FTA negotiation

- Customs is the *lead* negotiating agency for:
 - Rules of origin and
 - Customs cooperation/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chapters.
- Customs also plays an *advisory* role for any measures in other chapters that require border enforcement:
 - Goods market access
 - IP
 - Environment.



New Zealand Customs' role in the FTA implementation

- Legislative changes
- Outreach activities
- Ongoing engagement with Customs agencies (eg, the NZ – Korea FTA) to:
 - refine operational details
 - resolve case specific and process issues as they arise.



Background: the New Zealand – China FTA

- The New Zealand - China FTA came into force in 2008.
- It was China's first FTA with a developed country.
- Mutually beneficial concessions in the trade of goods and services, and investment.
- Deep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 Between 2009 and 2014, total goods trade between New Zealand and China doubled to NZ\$20 billion.



New Zealand Customs' experience of the China FTA

- Relatively smooth movement of good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mpared to the rapidly increased volume of the trade.
- From Customs' perspective, main issues have been around process aspects of evidencing origin under FTA:
 - Certificates of Origin issued by a certifying body are required
 -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ertificates of Origin issued in New Zealand
 - minor/stylistic variations made on Certificates of Origin
 - Chinese concerns over fraudulent documents.
- Tariff classification issues.

New Zealand Customs' approaches

- Taking a holistic and long-term approach to non-tariff barriers.
- Deepening the relationship with China Customs:
 - A Customs Counsellor position in Beijing (continuing dialogue)
 - Build relationship through increased cooperation in a range of areas (eg, intelligence exchange and enforcement cooperation for anti-drug smuggling efforts and detector dog training programme)
 - Annual talks.



Customs Minister Nicky Wagner and Vice Minister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 Mr Sun Yibiao

New Zealand Customs' approaches

- Joint Electronic Verification System:
 - Further work needs to be done, a possible go live date is 1 December.
- Efforts to increase the number of trusted traders.
- Negotiating 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benefits to traders through facilitation measures
 - a mechanism to further strengthen the relationship with China
 - the possibility of allowing trusted traders to self-certify in the future (subject to changes to the FTA).

New Zealand Customs' approaches

- Working with exporters and certifying bodies in New Zealand:
 - help and incentivise to comply.
- On the 'help' side, New Zealand Customs provide targeted information to New Zealand exporters (clarifying FTA rules and requirements and their obligations) through
 - China desk
 - Outreach programme (targeted based on data analysis).
- On the 'incentivise' side, New Zealand Customs regularly monitors and audits exporters and the certifying bodies in New Zealand and make them accountable.

COMPLIANCE



New Zealand Customs' approaches

In summary,

- Increase assurance over New Zealand exports.
- Increase trust on New Zealand goods from China.
- Build relationship with China.
- Help realising benefits provided under the FTA.

END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SESSION 1

FTA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

: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 3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방안

임병호__국제원산지정보원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방안

-품목분류·FTA원산지 사전심사를 중심으로-

2016. 11. 8

국제원산지정보원

임병호 선임연구원

목차

1. 사전심사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 운영현황
3. 주요국과의 비교
4.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사전심사의 경제적 효과

1. 사전심사와 효과

무역원활화협정과 사전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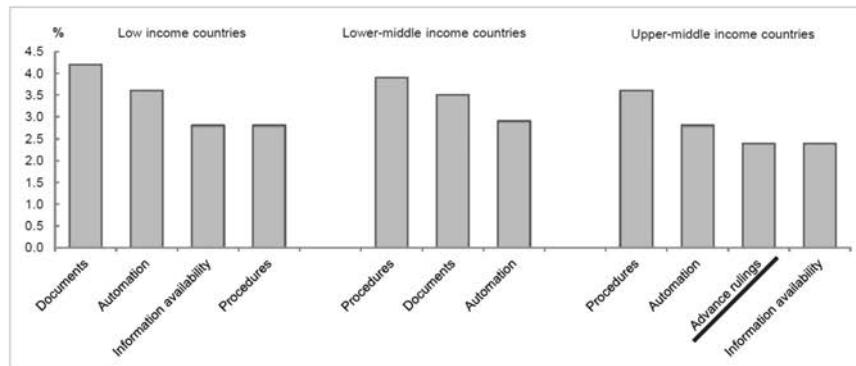
- WTO 회원국들은 2001년부터 14년간 합의를 통하여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이하 TFA)을 체결
- 무역원활화 협정 제3조에 “사전심사(Advance Ruling)”조항을 두어, 수출입자의 무역비용을 감소시키고 교역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무역원활화 협정	
제1절	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가능성
	제2조 의견제시 기회 발효 전 정보 및 협의
	제3조 사전심사
	제4조 불복청구 또는 재심을 위한 절차
	제5조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
	제6조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그리고 벌금에 대한 규율
	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
	제8조 국경 기관 협력
	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 하의 이동
	제10조 수입,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
	제11조 통과의 자유
	제12조 세관 협력

- Source: WTO(2015)

TFA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 OECD(2011)는 TFA의 수준이 각 국의 무역비용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동 연구는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무역비용 감소효과를 재산출하였으며, 저소득 국가에 있어서 무역비용을 최대 16.5%까지 감소시킨다고 발표함
- 특히 TFA의 무역비용감소 효과는 소득수준이 중하권인 국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함



- Source: OECD(2015)
- 소득수준 상중(upper-middle)인 국가의 경우, 무역비용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국경절차가 3.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자동화가 2.8%, 사전심사가 2.4% 수준인 것으로 분석함

사전심사가 교역,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 OECD(2011)은 TFA 중 사전심사가 교역 및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

$$\ln x_{ijt}^k = \beta_0^k + \beta_1^k \ln DIST_{ij} + \beta_2^k Contig_{ij} + \beta_3^k Lang_{ij} + \beta_4^k Col_{ij} + \beta_5^k Y_{it} + \beta_6^k E_{jt} + \beta_7^k REM_{i,2005} + \beta_8^k TFI_j^c + D_t + D_k + \varepsilon_{ijt}^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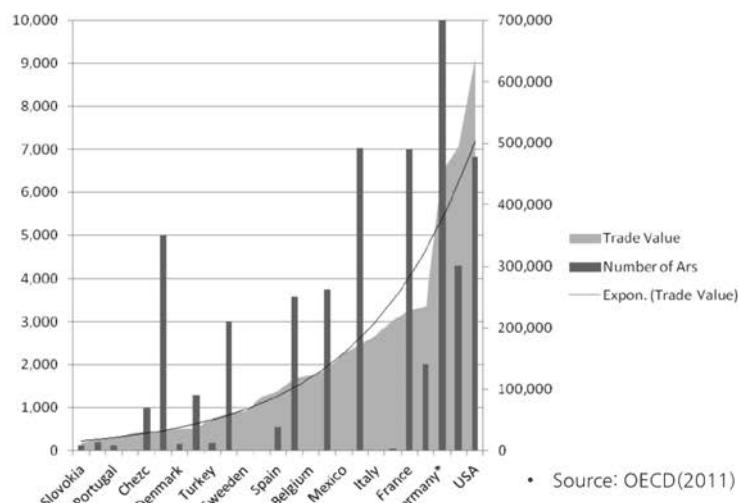
Manufacturing	TFI (a)	TFI (b)	TFI (c)	TFI (d)	TFI (e)	TFI (f)	TFI (g)	TFI (h)	TFI (i)	TFI (j)	TFI (l)
reg1	1.3274*** -9.4081	0.2986*** -5.3417	1.0560*** -12.7885	0.1487** -2.2621	0.1860** -2.4316	-0.3904*** (-5.7524)	0.6731*** -11.4519	1.3397*** -10.7218	0.4472*** -10.195	0.3031*** -7.8007	0.6518*** -9.1481

- Source: OECD(2011)

- 보고서에서는 제조업에 있어서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원활화 요소로서 아래의 요인을 제시
- TFI (c), *Advance Rulings*
- TFI (e), *Fees and Charges*
- TFI (g), *Formalities – Automation*, and
- TFI (h), *Formalities – Procedures*
- 사전심사가 증가할 수록 교역액이 증가하는, 양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음

사전심사와 교역액의 관계

- 한 국가의 교역액이 사전심사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교역액과 사전심사간 상관관계를 분석



- 분석결과 교역액-사전심사 건수의 상관계수는 0.49로 “긴밀히 상관됨”이라고는 할 수 없음
- 사전심사 건수는 통관장벽을 낮추어 교역액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나, 교역액의 증가가 다시 사전심사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즉, “인과관계 (causality)”가 아닌 “상관관계(correlation)”에 머무는 수준
- 사전심사 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역액”이 아닌 다른 외부변수에서 찾아야 함

사전심사와 교역액의 관계

- 미국 CROSS 사전심사 분석결과, 교역액이 많은 품목과 사전심사 건수가 많은 품목간에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

- 연구에서는 사전심사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아래의 변수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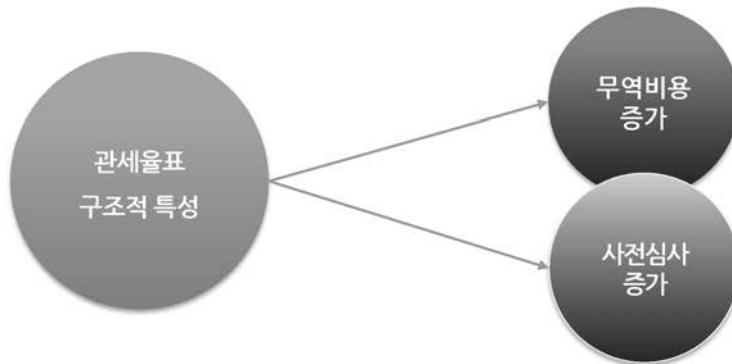
- 관세율
- 특혜적용비율
- 관세율표의 복잡성
(Number of tariff lines)
- 수입자의 수

Section	Trade value Millions of USD	Advance rulings		
		Per cent	Number	Per cent
I-Live Animals; Animal Products	17 391	1%	54	<1%
II-Vegetable Products	16 261	1%	43	<1%
III-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2 239	<1%	1	<1%
IV-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Tobacco	29 960	2%	638	5%
V-Mineral Products	210 910	14%	26	<1%
VI-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101 734	7%	799	7%
VII-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Rubber	40,097	3%	628	5%
VIII-Raw Hides, Handbags and Travel Goods	9 558	1%	491	4%
IX-Wood Articles and Articles of Wood Wicker etc.	23 554	2%	242	2%
X-Pulp Wood and Paper	24 037	2%	304	3%
XI-Textiles and Apparel	86 802	6%	4,419	37%
XII-Footwear and Headwear	19 626	1%	570	5%
XIII-Articles of Stone, Glass and Cement	14 631	1%	297	3%
XIV-Natural or Cultured Pearls and Precious Metals	33 414	2%	159	1%
XV-Base Metals	77 933	5%	609	5%
XVI-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	385 626	26%	904	8%
XVII-Vehicles, Aircraft and Vessels	210 788	14%	95	1%
XVIII-Optical, Photographic and Measuring Instruments	49 828	3%	222	2%
XIX-Arms	1 349	<1%	7	<1%
XX-Misc Manufactured	58 983	4%	1,187	10%
XXI-Works of Art	5 301	<1%	22	<1%
XXII-Special Classification	49 685	3%	103	1%
Total	1 469 704	100%	11,820	100%

Source: OECD(2011)

사전심사와 교역액의 관계: 시사점

- 사전심사 활성화는 교역의 증가보다는 관세율표의 복잡성, 특혜관세적용비율 등 세율을 다루는 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체계의 변경을 통하여 사전심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무역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당초 무역원활화와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도출할 것임



- 이에 따라, 구조적 문제보다는 사전심사를 다루는 구체적인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사전심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2. 우리나라의 사전심사 제도 운영현황

우리나라 사전심사 제도

- 우리나라 사전심사는 관세법상의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비특혜) 사전심사제도와 FTA특례법상의 원산지(특혜) 사전심사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사전심사 근거규정 및 요약 〉

구분	원산지 사전심사	FTA원산지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 사전심사
근거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FTA특례법 제31조	관세법 제86조	관세법 제37조
신청자	수입자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입자, 제조자, 관세사	납세신고자
심사대상	1 원산지 확인기준 충족여부 등 2 원산지 확인기준 충족여부 기초가 되는 사항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	신청물품의 품목분류	1 법정가산요소 2 1방법 배제요건 3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심사기간	신청일부터 60일	신청일부터 90일	신청일부터 30일 (FTA 검증확인 등 필요 시 15일)	1월 : 가산요소, 공제요소, 1방법 배제요건 등 1년 : 특수관계자간 결정
유효기간	없음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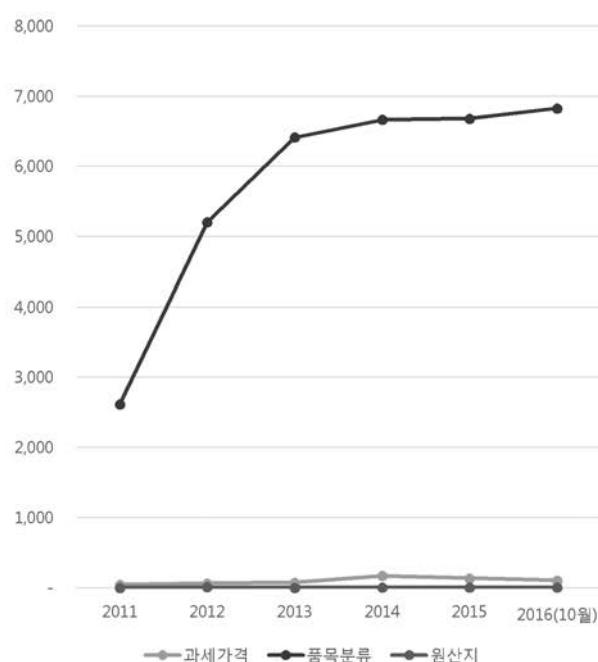
- 신청방법: 품목분류/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사전심사서 효력
 - 품목분류: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
 - 원산지: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우리나라 사전심사 동향

- 2011~2015 우리나라 사전심사 신청동향
- 품목분류 신청건수는 2011년 2,618건에서 2015년 6,681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과세가격 사전심사 역시 42건에서 136건으로 3배 이상 증가
- 반면,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5년째 한 자리 수준에 정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월)
과세가격	42	60	72	168	136	105
품목분류	2,618	5,207	6,413	6,665	6,681	6,828
원산지	-	8	-	4	2	4

Source: Korea Customs Service



우리나라 사전심사 현황

- OECD에서는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지표(Trade Facilitation Indicator)를 개발하여, 각국 TFI 지수를 공표함
- 무역원활화지표는 아래와 같은 총 12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이 중 사전심사는 TFI(c)지표로서 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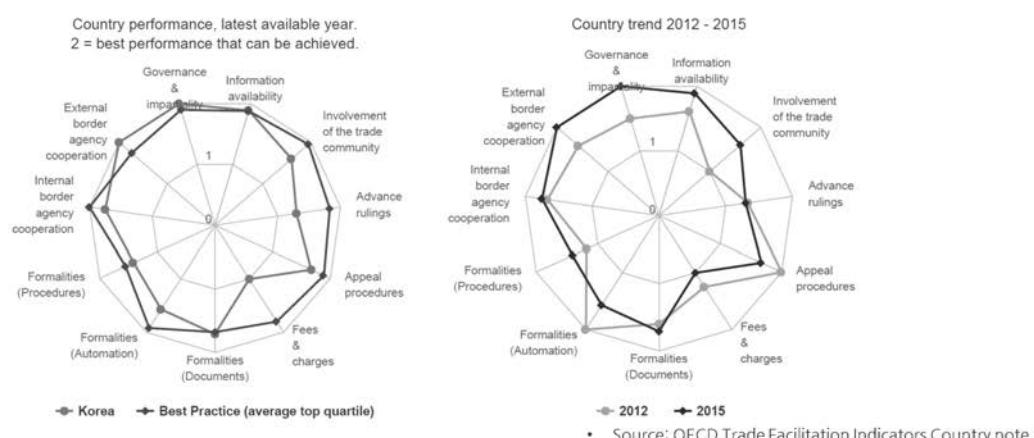
A	Information availability
B	Involvement of the trade community
C	Advance rulings
D	Appeal procedures
E	Fees and charges
F	Formalities - Documents
G	Formalities - Automation
H	Formalities - Procedures
I	Internal border agency cooperation
J	External border agency cooperation
L	Governance and impartiality

• Source: OECD(2015)

- 사전심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전심사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OECD 각 국의 사전심사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

우리나라 사전심사 현황

- OECD의 TFI로 우리나라 무역원활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국은 정보이용성(information availability), 문서간소화(simplification of documents), 세관협력(external border agency cooperation), 공공경영 및 불편부당성(governance and impartiality) 등에서 TFI 상위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과 2015년 비교 결과, 정보이용성, 교역집단의 참여(involvement of the trade community), 문서 간소화, 국경절차의 간소화, 세관협력, 공공경영 및 불편부당성 부분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재심사(appeal of procedures), 비용(fee and charges), 자동화(automation) 부분에서는 오히려 하락하였음.
- 사전심사(advance rulings)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2012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5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전심사지표

- OECD에서 개발한 사전심사지표(Advance Ruling Indicator)는 아래와 같이 총 10개의 지표로 구성됨
- 각 지표에 따른 응답수준(Answer)에 따라 0점~2점을 부여하여 총 20점 산정

Measure Id	Measure Code	Advance Ruling Indicator
24	C.24	Issuance of advance rulings
25	C.25	Number of advance ruling requests on tariff classification
26	C.26	Number of advance ruling requests on origin
27	C.27	Number of advance ruling requests (total)
28	C.28	Length of time for which the advance ruling is valid (duration)
29	C.29	Publication of average issuance time
30	C.30	Percentage of advance rulings issued within the published time period
31	C.31	Publication of advance rulings of general interest
32	C.32	Possibility to request a review of an advance ruling or its revocation / modification
33	C.33	Refusal to issue or revocation of advance ruling are motivated

- Source: OECD TFI simulation

사전심사 지표

- OECD의 사전심사 지표로 우리나라 무역원활화 사전심사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우수(2점)	보통(1점)	미흡(0점)
Issuance of advance rulings	Number of advance ruling requests on origin	Number of advance ruling requests on origin
Number of advance ruling requests on tariff classification	Publication of average issuance time	
Publication of advance rulings of general interest	Percentage of advance rulings issued within the published time period	
Possibility to request a review of an advance ruling or its revocation / modification		
Refusal to issue or revocation of advance ruling are motiv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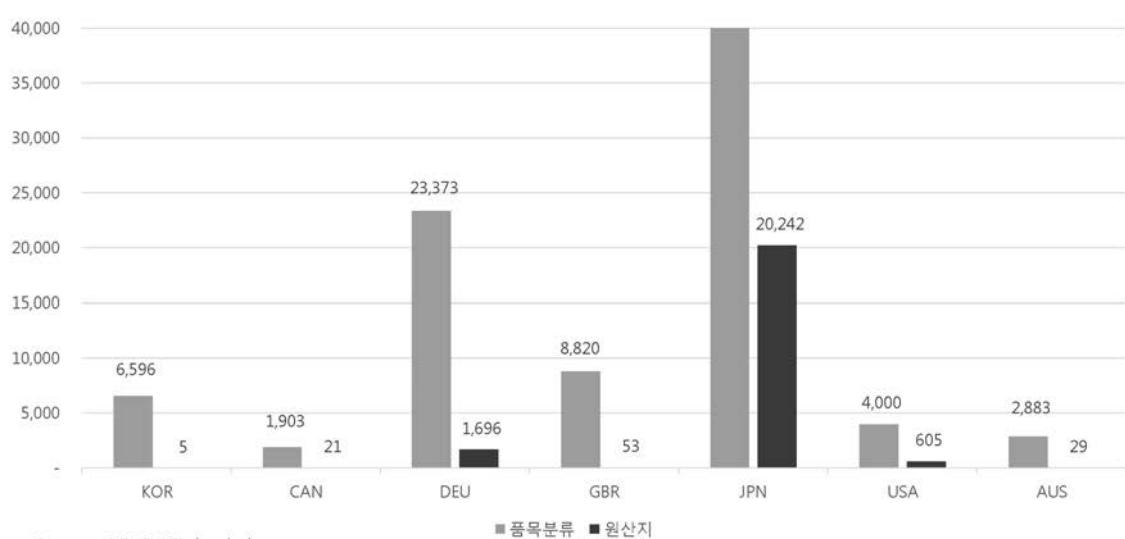
- 우수(2점)항목으로서는 사전심사 발급여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건수, 재심사 가능성 등이 있으며, 보통(1점)항목으로서는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건수, 평균발급기간, 기간내 발급비율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흡(0점)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으로서는 원산지사전심사 신청건수가 있음

- Source: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Country note

3. 주요국과의 비교

3. 주요국 사전심사 비교

품목분류,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건수



- Source: OECD TFI simulation
- 품목분류 신청건수는 일본이 82,776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독일이 23,373건으로 두번째로 높음. 우리나라의 경우 6,596건 신청하여, 프랑스, 영국 다음으로 많은 신청건수를 나타냄
-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일본이 20,242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독일이 1,696건으로 두번째임. 기타 국가로서 영국 53건, 캐나다 21건 순이며, 우리나라 5건. 호주의 경우, 자료확인 불가

일본 사전교시(事前教示)제도

- 일본 사전교시제도는 일반 서면에 의한 방법과 이메일(E-mail)에 의한 방법이 있음
- 이메일 사전교시제도는 세관 홈페이지상 '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양식'을 참고하여 필요사항 기재 후 메일 주소로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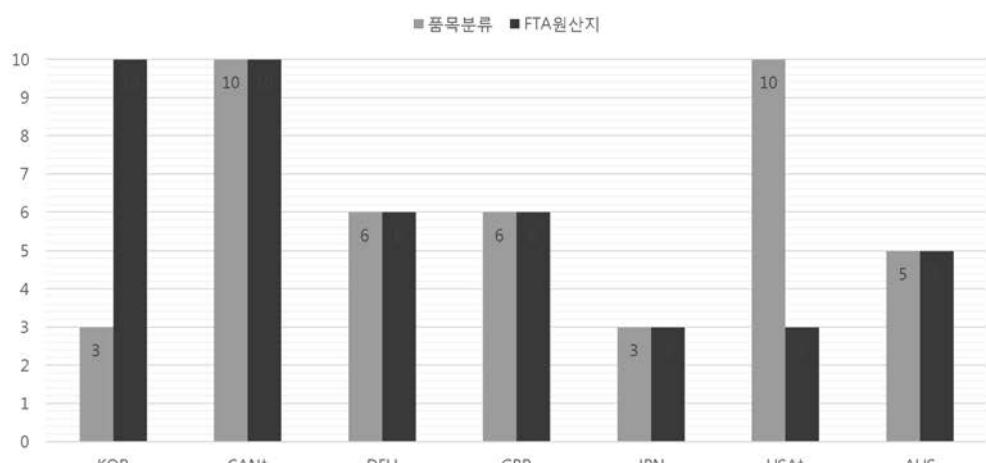
原産地用照会様式

照会日
照会者の氏名
住所
連絡先電話番号
連絡先メールアドレス
輸出入者符号
貨物の名称
(型番・銘柄)
製造地
輸入予定官署
照会貨物に係る事前教示実績の有無及び類似貨物に係る輸入実績の有無
上記貨物の (□WTO協定・□経済連携協定 ()) ・ □特恵・□その他 ())
税率適用に関する原産地について照会します
照会貨物の説明(関係する国における加工、製造に関する事項等)及び原産地認定に関する意見

- 신청일, 연락처, 화물의 품명 및 주요사항 등 간단한 양식만 요구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면 세관에서 회신
- 이메일 회답본은 '일정 조건하'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서면신청과 동일한 효력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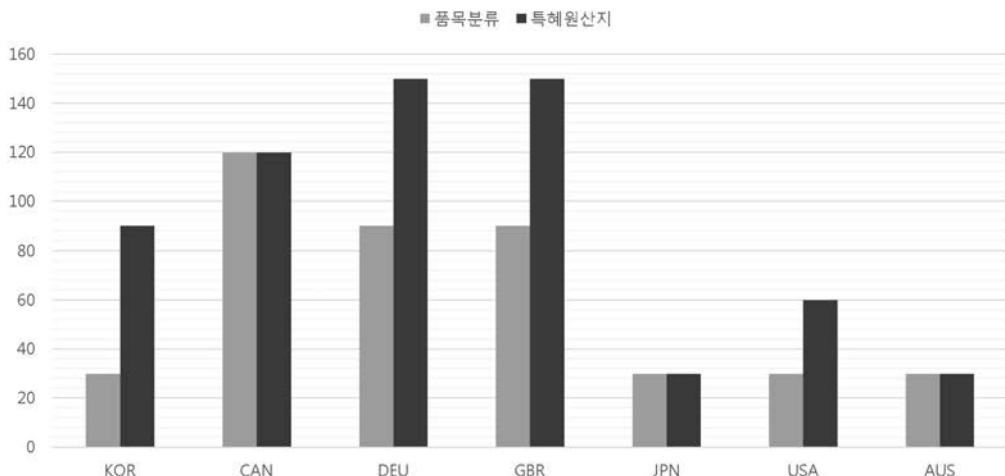
유효기간

(Length of time for which the advance ruling is valid, duration)



- Source: OECD TFI simulation (유효기간 10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
- 품목분류와 원산지 유효기간이 다른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임. 특히 특혜원산지 유효기간이 품목분류 유효기간보다 더 긴 국가는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
- 유럽권 국가들은 모두 6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 EU관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유효기간은 3년으로 단축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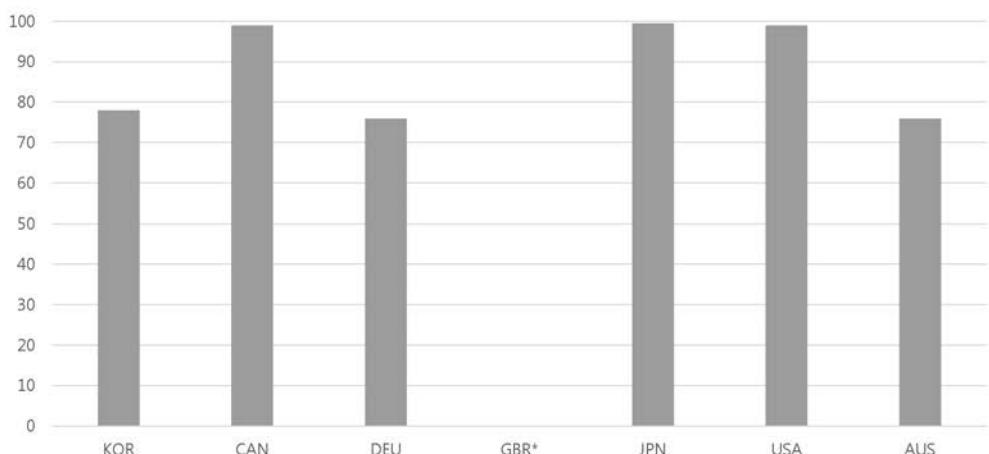
발급기간 (Issuance time)



- Source: OECD TFI simulation
- (품목분류) 캐나다가 발급기간이 120일로 가장 길며, EU회원국인 독일과 영국 모두 90일임.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호주 등은 30일
- (특혜원산지) 특혜원산지 발급기간은 품목분류와 같거나 더 긴 것이 일반적임. 우리나라, EU회원국, 미국은 특혜원산지 발급기간이 더 길며, 캐나다, 일본, 호주는 품목분류 발급기간과 동일함
- 우리나라의 특징은 특혜원산지 발급기간(90일)과 품목분류 발급기간(30)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

기간 내 발급비율

(Percentage of advance rulings issued within the published time period)



- Source: OECD TFI simulation
- 우리나라와 독일, 호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는 대부분 설정된 기간 내 100%가까이 사전심사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78%, 독일과 호주는 76%로서 상대적으로 기간 내 발급비율이 낮은 수준
- 영국의 경우, 자료확인 불가

수수료, 적용대상

- 수수료
- 품목분류 사전심사시 일반적인 경우 수수료 없음. 단, 분석수수료의 경우 3만원 소요
- 원산지 사전심사의 수수료는 없으나, FTA원산지 사전심사의 경우 품목당 3만원 소요

FTA특례법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4항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반면, 기타 국가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FTA원산지 사전심사시 품목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적용대상

-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경우 사전심사 적용시, 신청한 물품과 완전히 동일한 물품에 한하여 사전심사 적용
- 반면, 호주 등 기타 국가들은 동일 조건의 다른 당사자도 해당 사전심사 결정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

FTA특례법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항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생략)...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문제점 및 대응방안

문제점

1. 사전심사서 기간 내 발급비율 저조

-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간 내 발급비율: 78%, 캐나다, 미국, 일본 등 100% 근접하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
- 기간 내 발급비율이 낮은 원인으로서
 - 짧은 품목분류 발급기간: 30일
 - 급증하는 품목분류 신청건수: 관세청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초과
 - 자료보정요구(20일)로 인한 기한 연장(보정기간은 발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2. 긴 원산지 사전심사 발급기간: 90일

- 우리나라 FTA원산지 사전심사서 발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90일
- 긴 발급기간은 신청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인은 원산지 대신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신청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Ex) 4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 대신,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 확인으로 원산지 판정 가능

[별지 제21호서식] 사전심사신청서

사전 심사				原産地用照会様式
1.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照会日 _____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_____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3. 수출자 또는 생산자	<input type="checkbox"/> _____			
				(할 수 있는 경우 성명, 주소, 국가)
				照会者の氏名 _____
				住所 _____
				連絡先電話番号 _____
4. 신청물품	連絡先メールアドレス _____			
품명	HS번호(6단위)	조정가격(S)	輸出入者符号 _____	
5. 원재료 내역	貨物の名称 _____			
원재료 품명	HS번호(6단위)	가격(S)	원	(型番・銘柄) _____
⋮				製造地 _____
⋮				輸入予定官署 _____
⋮				照会貨物に係る事前教示実績の有無及び類似貨物に係わる輸入実績の有無 _____
6. 사전 심사 신청내용	上記貨物의 <input type="checkbox"/> WTO協定 · <input type="checkbox"/> 経済連携協定 () · <input type="checkbox"/> 特惠 · <input type="checkbox"/> その他 () 税率適用に関する原産地について照会します 照会貨物の説明(関係する国における加工、製造に関する事項等)及び原産地認定に関する意見 ⑦ 기타 <input type="checkbox"/> (상세 기재)			
7. 물품의 법적지위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표시를 하고, 물품 ① 원산지: 관중 <input type="checkbox"/> ② 행정적 심사 또는 불복청구 <input type="checkbox"/> ③ 사법적 또는 중사법적 심사 <input type="checkbox"/> ④ 사전심사요청 <input type="checkbox"/> 이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과 진술은 그 작성한 것으로서 진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보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험정관세의 적용이 배			
신청인 서명	_____			
신청인과의 관계	_____			

* 만약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다른 용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응방안

1. 기간 내 발급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 및 보정요청 자제

- 보정요구를 가능한 자제하여 발급기간 30일 준수 노력 필요
- 유효기간 연장: 품목분류사전심사 유효기간을 원산지와 동일하게 연장 검토(유효기간 미설정)
 - OECD TFI에서는 유효기간 5년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인 경우(0점)와 5년 이상인 경우(1점),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2점)로 구분
- 결정된 사전심사서를 근거로 동일한 모델에 한정하여 동종업계 사용권고
 - 모델명 차이로 인한 특혜적용 거부 등 사례 발생

2. 품목분류·원산지 사전심사 발급기간 일치 (원산지 사전심사 발급기간 90일 → 30일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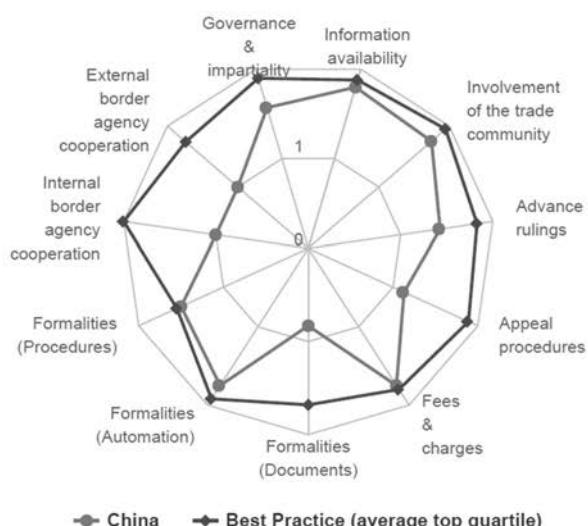
- FTA원산지 사전심사 발급기간을 품목분류와 동일한 30일로 단축하여 활성화
- 발급기간 단축으로 신청자는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문을 빠른 시간 내에 확인 가능

3. 원산지예비사전심사(Pre-advance ruling of Origin)제도 도입

- 일본의 이메일 사전교시제도를 모델로, 원산지사전심사의 사전적 성격을 갖는 '원산지예비사전심사' 제도 도입
- 원산지예비사전심사 자체는 참고용이며, 일정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일반 사전심사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
- 사전적 조사성격을 가지는 원산지예비사전심사의 경우, 원산지전문기관에서 위탁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대응방안

4. 체약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의 사전심사 활용을 위한 방안 강구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사전심사 결정을 받고, 이를 수입신고시 제출하도록 장려
- FTA체약상대국과 원산지 사전심사서 상호인정 방안 검토
- FTA특례법에 따라 사전심사는 수입자 뿐 아니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도 활용 가능

감사합니다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특강



문화코드로 읽는 중국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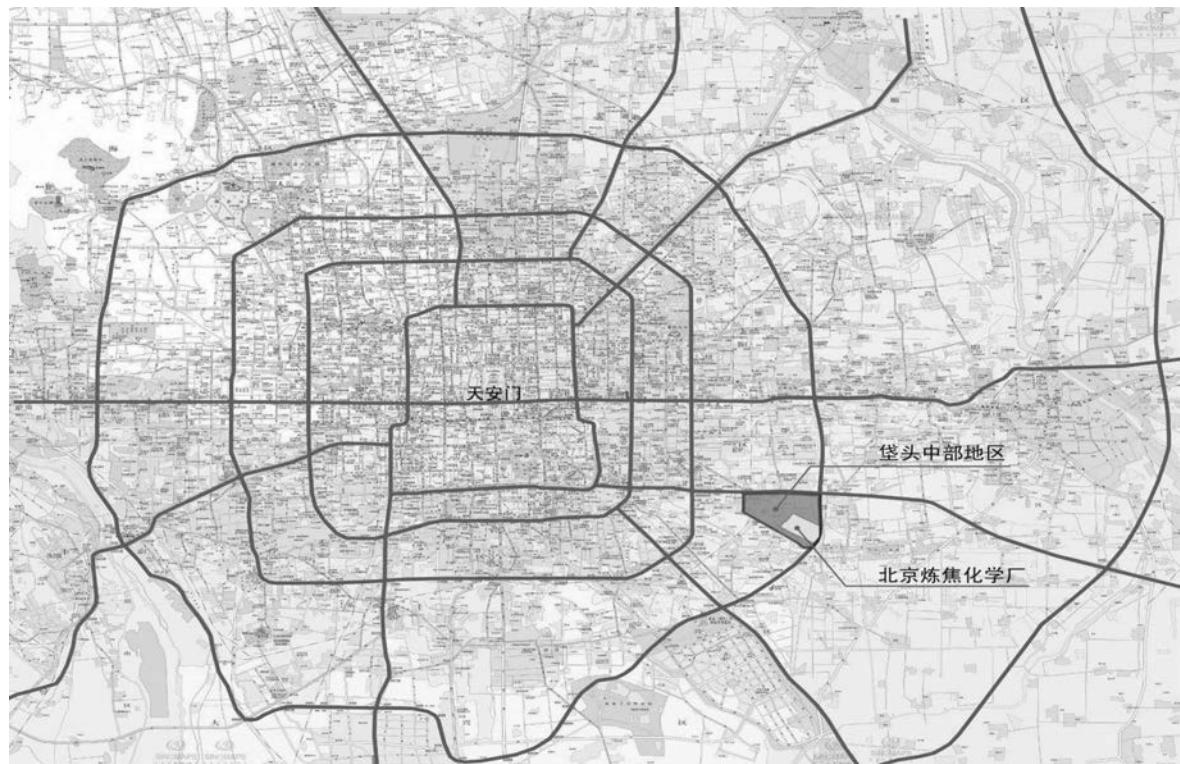
Chen Li_국립외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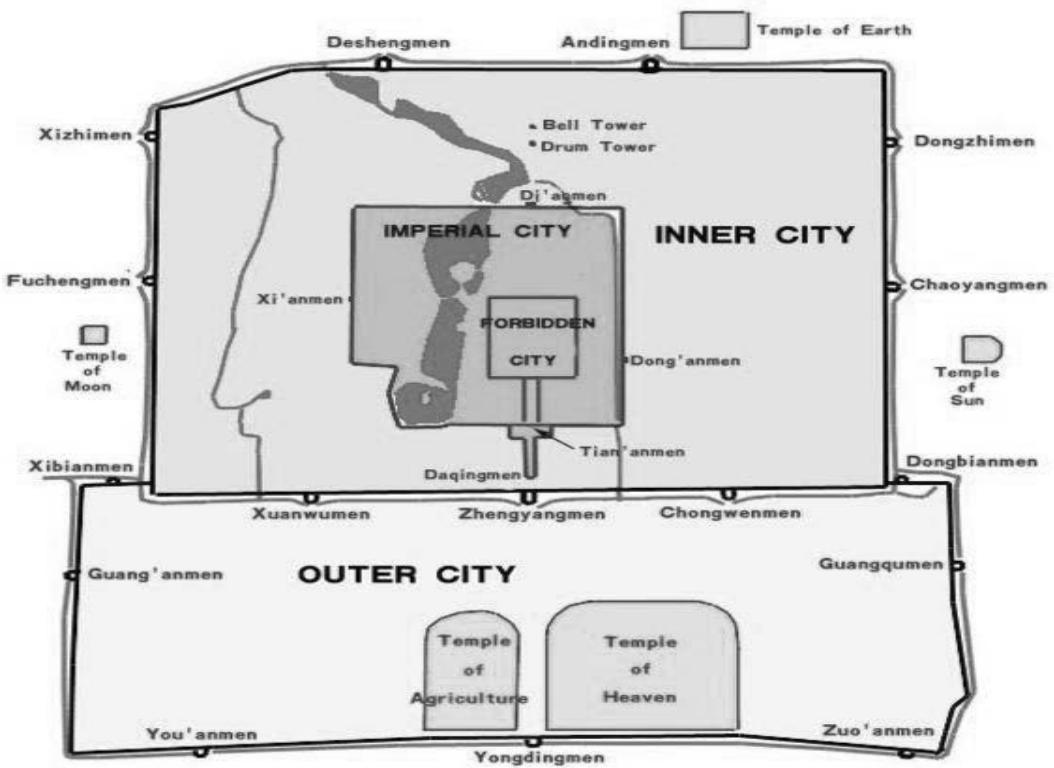
베이징——城(성)



베이징——环(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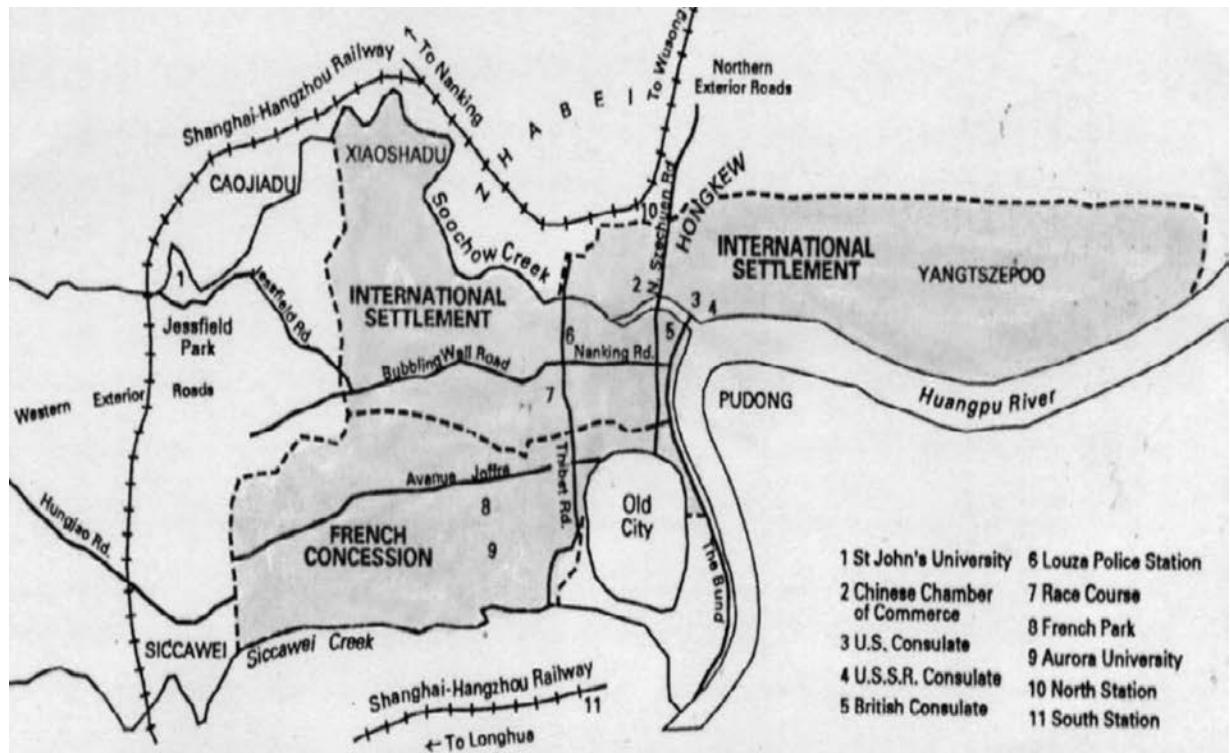
베이징——城(성)



北京(běijīng) = 背景(bèijǐng)



상하이——滩(여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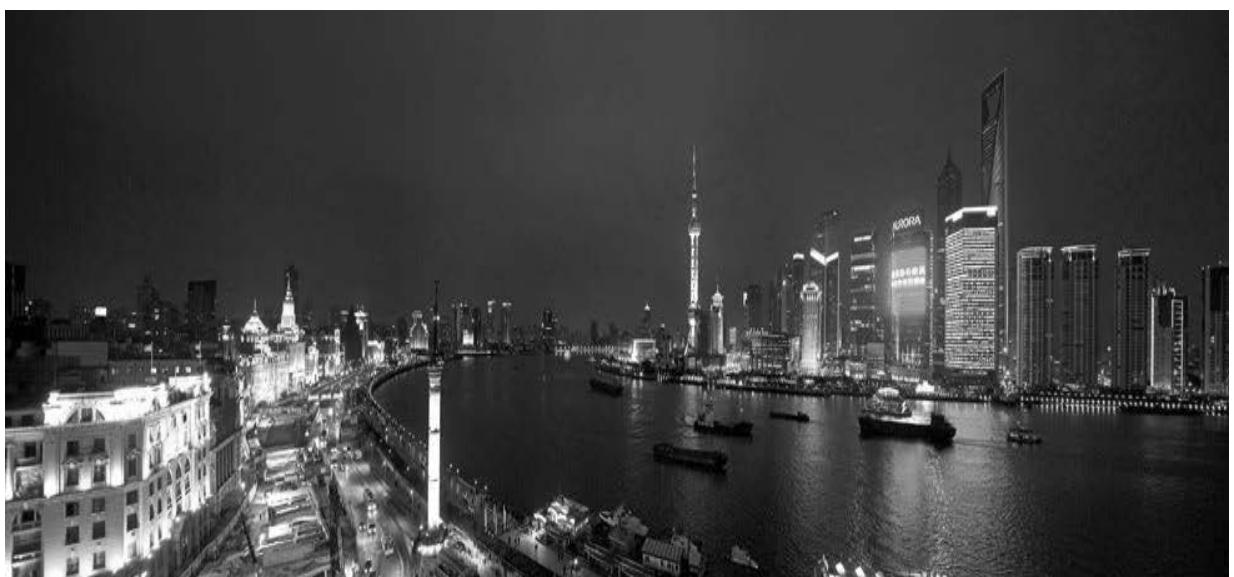
상하이 와이탄——푸둥



상하이 와이탄——푸시



上海(shànghǎi) = 商海(shānghǎi)



교통문제



베이징 & 상하이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12간지의 현대적 적용



명품의 중국풍



명품의 중국풍



명품의 중국풍



전통문화의 현대적 영향



마케팅 사례



마케팅 사례



마케팅 사례



七八

위기의식

一 口

소통능력

月



凡

다년간의 노하우

贝

시간, 자금 투자

작은 일부터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SESSION 2

한·중 FTA 특별 세션

: 양국 C/O발급과 협정적용절차 조화



발표 1 CCPIT's A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Origin of Certificate Service Work

유해연 CCPIT

CCPIT's A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Origin of Certificate Service Work

- I. Introducing CCPIT
- II. Introducing Commercial and Legal Service Center
- III. Introducing five CCPIT Sino-Korea FTA Service Platform
 - 1.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Platform
 - 2. Cooperation Platform for Governmental Departments
 - 3. Cooperation Platform for Industrial,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ion
 - 4. FTA Service Network
 - 5. FTA Professional Service Platform
- IV. Introducing the work of Origin of Certificate
- V. Introducing other businesses of Commercial and Legal Service Cente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SESSION 2

한·중 FTA 특별 세션
: 양국 C/O발급과 협정적용절차 조화



발표 2 한·중 FTA 활용에 관한 기업애로
송형근 한국무역협회



한-중 FTA 활용에 관한 기업애로

2016. 11. 8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Contents

1. 양국간 품목분류(HS Code) 상이

2. 규정에 부합하는 C/O 불인정 사례

3. 검증시 불필요한 기술정보 요구

1. 양국간 품목분류(HS Code) 상이

● 애로유형 1

✓ 양국간 품목분류(HS Code) 상이에 따른 사후검증 대비 부담

- 양 국가간 HS Code를 상이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존재함

* 대표적인 품목분류 상이사례 : 조미김, 유자청, 자동차부품류, 휴대폰 부분품 등

< HS Code가 상이한 품목별 한-중 세번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조미김	2106.90호 기타 조제식료품	2008.99호 과실·견과류 조제품
유자청	2008.30호 조제한 유자	2106.90호 기타 조제식료품
자동차부품	8708.99호 자동차 전용 부분품	7326.90호 기타 철강제품

FTA종합지원센터 | FTA콜센터1380

1. 양국간 품목분류(HS Code) 상이

< 조미김 분류에 대한 한-중 관세율표 체계>

- 중국 관세율표 (HS 2108.9931-00)

HS			품명	Description	MFN (기본세율)	한-중 FTA	원산지 기준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9931 00			Seasoned laver		15%	13.5%	CC

- 대한민국 관세율표 (HS 2106.90-4010)

HS			품명	Description	기본 세율	한-중 FTA	원산지 기준
2106	9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40		조제한 식용 해초류	Prepared edible seaweeds			
	10	김	Laver		8%	7.6%	CTH

⇒ 동일 품목(조미김)에 대한 관세율표상 HS code 분류가 한-중 양국간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따라 원산지결정기준[CC(2단위변경)/CTH(4단위변경)] 또한 다르게 규정됨

FTA종합지원센터 | FTA콜센터1380

1. 양국간 품목분류(HS Code) 상이

< 조미김 분류에 대한 대한민국 관세청 분류 사례 >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64
시행일자	2016-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u>2106.90-4010</u>
품명	Prepared laver : GIMBAP LAVER(김밥김)
물품설명	건조 후 김으로, 흑녹색 시트상 (21cmX19cm, 100매, 230g) *용도 : 식용
결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을 특게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 용해 또는 물 ·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김을 구운것으로서 '조제한 식용 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4010호에 분류함. 끝.

FTA종합지원센터 | FTA콜센터1380

1. 양국간 품목분류(HS Code) 상이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상이 시 처리지침

1 수출자의 경우

-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는 경우
→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확인서=품목분류사전심사결정서)

FTA종합지원센터 | FTA콜센터1380

1. 양국간 품목분류(HS Code) 상이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상이 시 처리지침

2 수입자의 경우

- C/O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가 다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① HS Code가 C/O 필수항목인 협정

☞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EU, EFTA, 터키, 페루)

② HS Code가 C/O 필수항목이 아닌 협정

가.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 각각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 : “협정관세 적용”

나. 둘 중에 하나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우선적으로 협정적용 처리 수입 후 “원산지조사 부서에 검증 의뢰”

FTA종합지원센터 | FTA콜센터1380

1. 양국간 품목분류(HS Code) 상이

● 애로내용

❖ 수출자의 경우

-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동일물품에 관해 양국 HS Code에 해당하는 검증자료를 모두 준비 및 보관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수입자의 경우

- 현재 관세청에서 수입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 HS Code가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결정기준을 따져 일부 승 인해주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 각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협정 적용은 해주되 원산지조사 검증부서에 의뢰하는 등 수입자 입장에서의 불안문제 발생

FTA종합지원센터 | FTA콜센터1380

2. 규정에 부합하는 C/O 불인정 사례

● 애로유형 2

✓ 협정상 정당하게 발급된 C/O를 상대국에서 불인정

- 협정 규정상 정당하게 발급된 C/O임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 일부 세관에서 이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가. C/O 소급문구 문제

❖ 협정 및 규정

: 선적 후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급문구” 기재

✓ 현장애로

: 7일 이내 발급 시에도 “소급문구가 없는 경우에 불인정”

FTA종합지원센터 | FTA콜센터1380

2. 규정에 부합하는 C/O 불인정 사례

나. C/O 중량표기 문제

❖ 협정 및 규정

: C/O상 11번 Gross weight, Quantity 표기란에 총중량 표기

✓ 현장애로

: 원산지판정과 관련성이 적은 중량 표기법과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C/O 재발급을 요청 (예 : 총중량 기재 후 순중량 병행표기)

다. 전자문서 문제

❖ 협정 및 규정

: 현행 우리나라 기관발급 C/O는 모두 전자문서 및 전자출력물임

✓ 현장애로

: 현행 우리나라 발급상황 상 전자출력물만 존재하나, 수입국 세관에서 인주가 날인(Stamping)된 문서를 요구

FTA종합지원센터 | FTA콜센터1380

3. 검증시 불필요한 기술정보 요구

● 애로유형 3

✓ 사후검증 시 기술정보자료 요구 문제

- 상대국의 사후검증 시 원산지결정기준 및 판정과 무관한 자료 요구
- 기업 대외비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요구

(예시)

- 중국해관이 국내 모 화장품 회사 사후검증 시 화장품 성분 및 배합비율까지 공개 요구
→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성분 및 배합비율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FTA종합지원센터 | FTA콜센터1380

“한중FTA 활용,
차이나데스크에 다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SESSION 2

한·중 FTA 특별 세션
: 양국 C/O발급과 협정적용절차 조화



발표 3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통관애로지원 방안

한은숙_대한상공회의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통관애로지원 방안

2016. 11. 8

대한상공회의소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차례

I.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

II. 원산지증명서 조회오류 및 통관지연 사례

III. 원산지증명서 통관애로 지원방안

I.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

I.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

■ 비특혜/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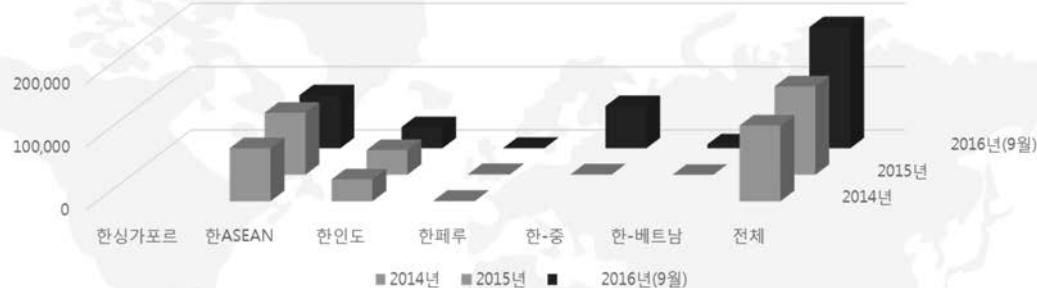
- ▶ 1952~ :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 비특혜 C/O
- ▶ 1979~ : ATA 까르네 (임시통관증서)
- ▶ 2003~ :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 ⇒ 특혜 C/O

■ 웹기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발급)

- ▶ 2006.10~ : 웹인증 시스템 기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울지역)
- ▶ 2007. 6 ~ : 한-아세안 FTA C/O
- ▶ 2008. 2 ~ : 웹인증 시스템 확대 (전국지역)
- ▶ 2010. 1 ~ : 한-인도 CEPA C/O
- ▶ 2011. 8 ~ 2016. 7 : 한-페루 FTA C/O
- ▶ 2015.12 ~ : 한-베트남, 한-중국 FTA C/O

I.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

■ 연도별/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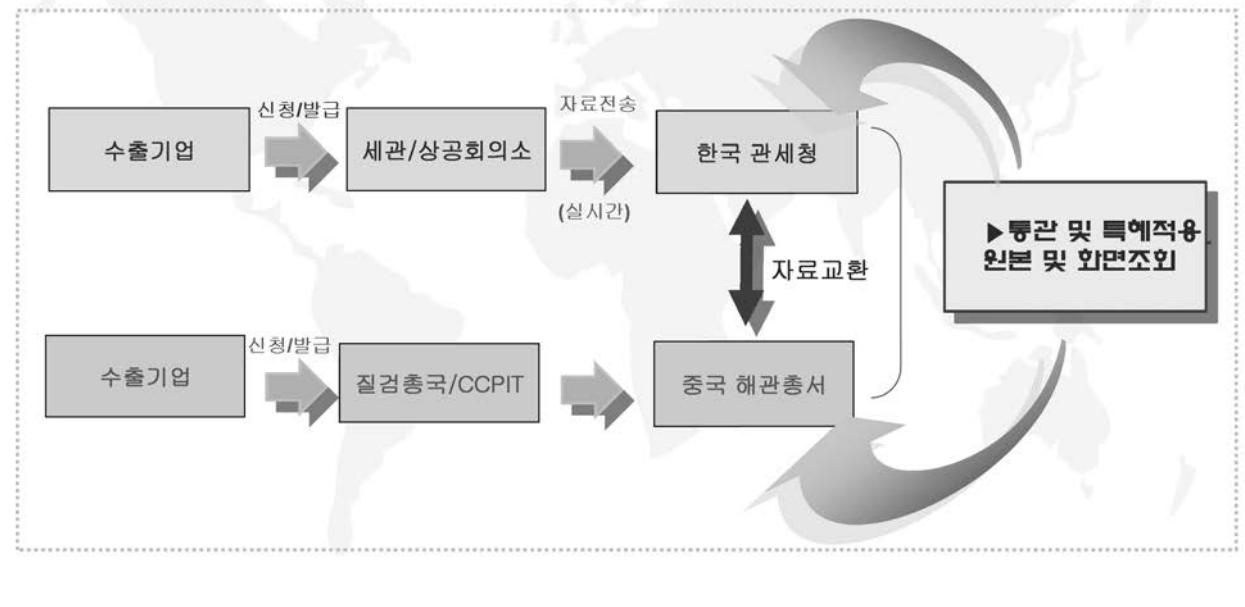
- 전국상공회의소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건수 기준 (한-미, 한-EU 등 자율발급 대상 제외)
- 한-싱가포르: 일반품목 영세율 적용국

II. 원산지증명서 조회오류 및 통관지연 사례

II. 원산지증명서 조회오류 및 통관지연 사례

■ 한-중 FTA 원산지 발급자료 교환 및 통관/특혜 적용 절차

▶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 원본 CO VS 전산자료 불일치



II. 원산지증명서 조회오류 및 통관지연 사례

▶ 사례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전산 조회오류

원본 C/O

VS

전산 조회 불일치

규격/모델 총중량 기재



규격/모델별로 정정 요청

통합 1개 품목으로 기재



수출신고서 3개 품목 '란별' 기재 요청

품목 20개(란) 초과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HS코드가 같더라도 모델규격이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하여 작성

II. 원산지증명서 조회오류 및 통관지연 사례

▶ 사례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전산 조회오류

원본 C/O

VS

전산 조회 불일치

세관/상의 간 CO서식 불일치
* 11항: 상의 총중량, 세관 총중량/수량

11항 세관과 일치 : 총중량, 수량

상의 실시간 전송, 관세청 실시간 전송

중국해관 발급 정보 조회안됨

중국 품목분류 상이

수입국 기준 HS로 C/O 발급

단위 불일치

중국에서 사용하는 수량단위로 입력

II. 원산지증명서 조회오류 및 통관지연 사례

한-중 FTA C/O 항목별 불일치 조항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원본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국가:	증명서 번호: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국가:	발급처 (류체 실명 창조)											
3.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국가:	5. 비고:											
4. 운송 수단 및 경로(나는 영문까지 기재)												
출발일:												
신의/항공기기/차량 편성:												
선적항:												
목적항:												
6. 물품의 언번 (최대 20)	7. 포장내 화인 및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	8.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	9. HS 코드(6 자)	10. 원산지 기준	11. 총중량, 수량(수량단위) 또는 그 별자 (t)(kg), m3 (%)	12. 운송 단위 (t)(kg), m3 (%)	13. 허용 기한 (Max 20)	14. HS code (자체 기준) (Max 20)	15. HS code (자체 기준) (Max 20)	16. 원산지 국가 (Country) 또는 그 별자 (Country)	17. 원산지 국가 (Country) 또는 그 별자 (Country)	18. 원산지 국가 (Country) 또는 그 별자 (Country)

ANNEX J-C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see Circular Instructions)											
5. Remarks:											
6. Date of Departure/Date Vehicle/Fight/Traffic/Vehicle No.:											
7. Port of discharge:											
8. Item No. (Max 20)											
9.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10. Origin country (Country) or other measures (See Annex B)	11. Gross weight, quantity (Country) or other measures (See Annex B)	12. Number and date of issue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항목별 허용범위

6항- 물품의 연번 : 최대 20개 허용

7항- 화인(Marks) : 50문자 이내 허용

8항- 상품명세 : 모델규격별 상세기재

9항- HS code : 수입국(중국) HS code 기재

11항- 총중량,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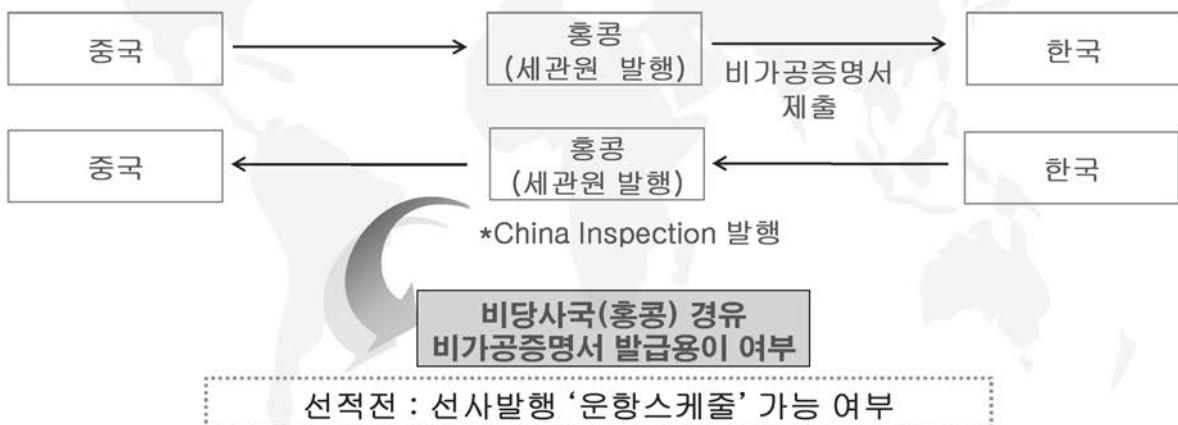
13항- 수출자 서명

14항- 발급자 서명

II. 원산지증명서 조회오류 및 통관지연 사례

제 4항 직접운송

- ▶ 직접운송 원칙
 - ▶ 비당사국 경우 :
 - 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결합 운송서류 ⇒ 선사가 발행
 - 복합화물운송장, 선하증권 ⇒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전 구간 확인 가능



II. 원산지증명서 조회오류 및 통관지연 사례

제 6항 기재방법

- ▶ 상품 송장 모델·규격별로 기재 ⇒ 각 란에 상품명세 상세히 기재
 - ▶ 원산지증명서 1건당 최대 20개 기재 ⇒ 전체 품목수 최대 20개 허용
 - ▶ 품목수 20개 초과시 ⇒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 ▶ HS코드가 동일하고, 모델규격이 다른 경우 ⇒ 란을 달리하여 작성

수입국(중국) 통관지연·재발급요청

- 수입국 통관지연 비용 발생
 - 재발급 요청 빈번

II. 원산지증명서 조회오류 및 통관지연 사례

제 8항 기재방법

- ▶ 포장의 수량, 종류 기재 ⇒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
- ▶ 물품명세는 세관원이 상품 식별이 가능토록 기재
- ▶ 상품과 송장 및 HS의 물품명세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
- ▶ 상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 “IN Bulk”를 기재

세관담당자 주관판단에 따른
통관불이행 발생 가능

* 명확한 기재내용 및 필수/기타 검사 항목 협의 필요

II. 원산지증명서 조회오류 및 통관지연 사례

제 9항 기재방법

- ▶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HS 6단위 기재 ⇒ 수입국 HS코드로 기재
- ▶ 중국해관의 공식적인 문서로 HS코드 확인 ⇒ 사전심사서 등
- ▶ 동 HS코드로 분류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 인정

수입국(중국) HS코드
‘협정관세 적용대상여부’, ‘허용범위’ 판단 오류발생

※ 품목분류 상이시 처리지침(한국)
⇒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특혜적용
⇒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II. 원산지증명서 조회오류 및 통관지연 사례

제 1, 13항 기재방법

- ▶ CO 발급 신청자 ⇒ 수출자, 생산자, 권한 있는 대리인
- ▶ 1항 수출자란 ⇒ 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기재
- ▶ 13항 수출자 서명 ⇒ 1항에 수출자 또는 수출자/수출대행인 병기 가능

권한 있는 대리인 범위
통관불이행 발생 가능

* 1항, 13항 연계성 주지 및 기업체 홍보

III. 원산지증명서 통관애로 지원방안

III. 원산지증명서 통관애로 지원방안

■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 VS C/O

【한-중 P/L(Paperless) 목적에 부합하는 통관심사 개선

수입국 통관심사 간소화 절차

- 거대시장 FTA 발효로 특혜활용 지원
- DB조회 불일치/원산지 심사 지연 해결
- 통관비용 증가 해결

C/O 진본여부 확인 방법 홍보

- 상의/세관 조회시스템 ⇒ 진본확인
- PL확인 우선 ⇒ 원본 CO 제출
-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통관시간 단축 지원 필요

‘효율적인’ 한-중 FTA 활용 극대화 지원

- 비관세 장벽, 불이행 점검
- 상호호혜적 발급/통관 절차 신속지원

III. 원산지증명서 통관애로 지원방안

■ 관계당국간-발급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한-중 관세당국 간 긴급 협조체제 구축

- ▶ HS Code 상이 품목 사례제시 필요

관세청-대한상의 간 긴급 협조체제 구축

- ▶ 관세당국간 필수 체크항목 공유
- ▶ 기타 전송항목 통관장애 제외 요청

*전산중심 상호신뢰 통관절차 개선

발급기관 간 긴급 협조체제 구축

- ▶ 원산지증명서 내용 불일치 공유
- ▶ 기업 통관애로 지원체제 구축
- ▶ 현안이슈, 동향, 발급지침 공유

대한상의 / 세관 (한국)
*CCPIT / *질검총국 (중국)

*CCPIT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질검총국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감사합니다.
Cert.korchem.net

대한상공회의소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SESSION 2

한·중 FTA 특별 세션
: 양국 C/O발급과 협정적용절차 조화



발표 4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 (EODES) 운영과 협정적용절차

정재호 관세청

2016 국제원산지세미나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 (EODES) 운영과 협정적용절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정재호 사무관

목 차

1. 한-중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 개요
2. 한-중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작성 요령
3. 한-중 FTA 통관애로 해소 방안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

Korea Customs Service | 3

EODES의 정의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C/O)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양 세관당국간 교환하는 시스템”

Korea Customs Service | 4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한-중 FTA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 약정(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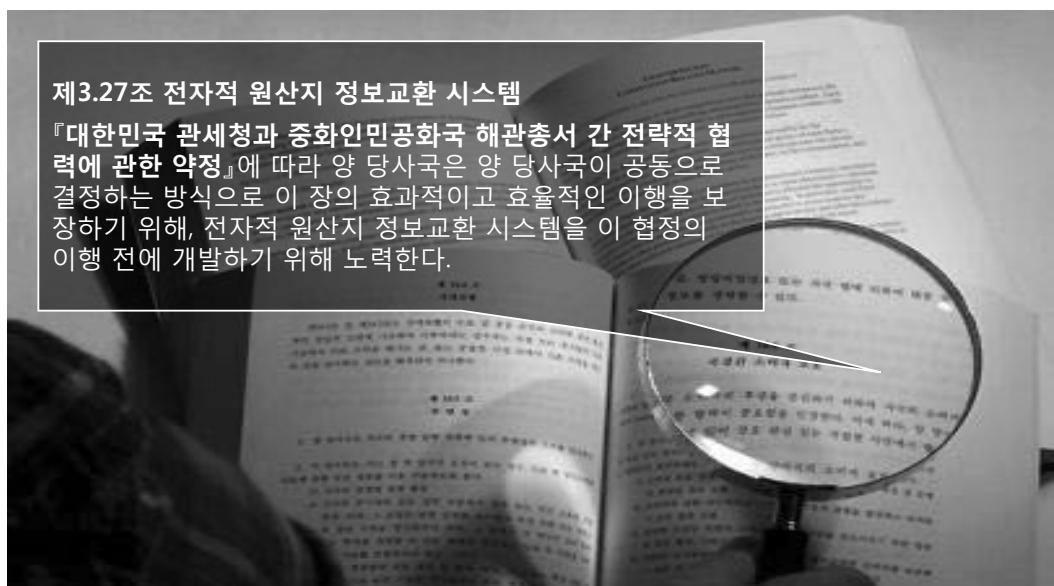


양국간 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 및 특혜관세 적용 정보 교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합의
정상회담 공동성명 부속서로 채택
EODES 구축 운영을 위한 실행력·실효성 확보



Korea Customs Service | 5

한-중 FTA 협정문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 명시



제3.27조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이 협정의 이행 전에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Korea Customs Service | 6



“한-중 FTA 체결이 하루 지연되면
일일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
(2015.11월)

우리가 기대하는 한-중 FTA 체결 효과는 EODES 구축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수 있어…

Korea Customs Service | 7

한-중 FTA의 특수성

■● 왜! 한-중 FTA에는 EODES가 필요한가? ●■

太 近

한-중 간 지리적 인접성으로 C/O가 화물보다 늦게 도착
중국은 수입통관시 C/O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특송으로 오는 C/O를 2일 이상 기다려야 겨우 수입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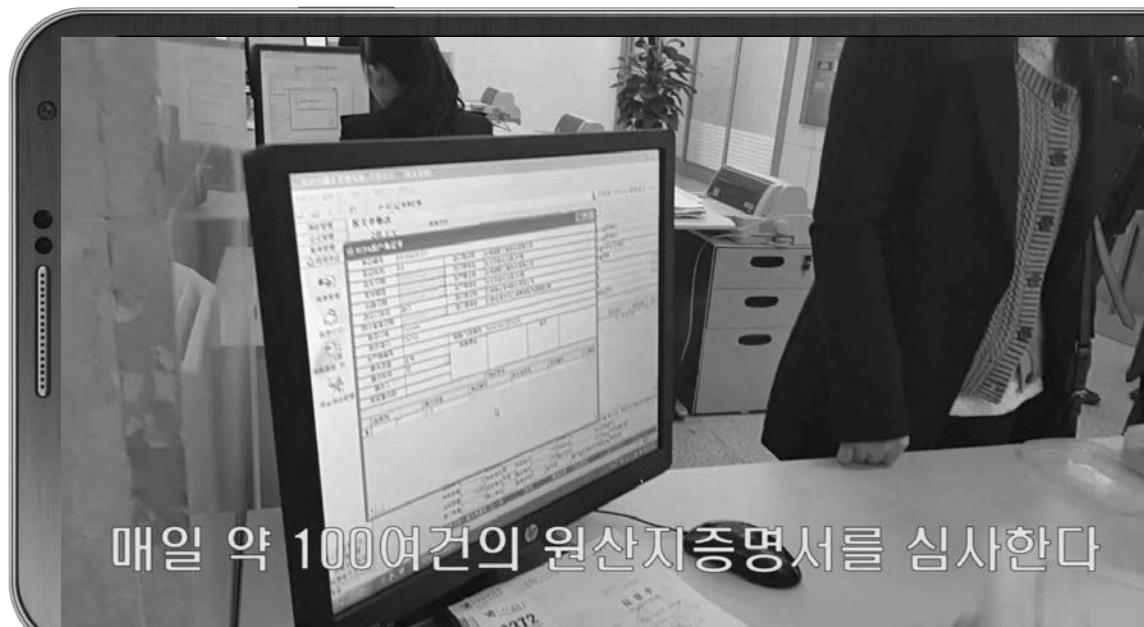
太 多

중국은 우리의 제1교역국으로 FTA 신청 건은 폭증하나,
해관 인원은 더디게 증가하여
1인당 업무부담 가중으로 통관 지체 예상

太 慢

세수감소를 우려 FTA를 포함 감면 건은 100% 서류심사
C/O 위조여부 및 원산지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하여
통관 지체 예상

Korea Customs Service | 8



Korea Customs Service | 9

한-중 FTA 이행협력회의



우리나라가 기 체결한 FTA 협정 중 한-중 FTA에 최초 시도
이와 같은 대량 실시간 국가간 자료교환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음

Korea Customs Service | 10

협업 및 IT 기술을 통해
우리측과 중국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한-중 FTA 협정의 EODES 개발 합의



한-중 관세청장회의
[2016.6월]

한-중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약정 [2015.10 체결]

한-중 FTA 협정 [2015.4 체결]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이행에 관한 약정 [2014.7 체결]

Korea Customs Service | 11

EODES 업무 프로세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國家質量監督檢疫檢驗總局]

약어 : AQSIQ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품질과
검역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원 직속기구



세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中國貿易促進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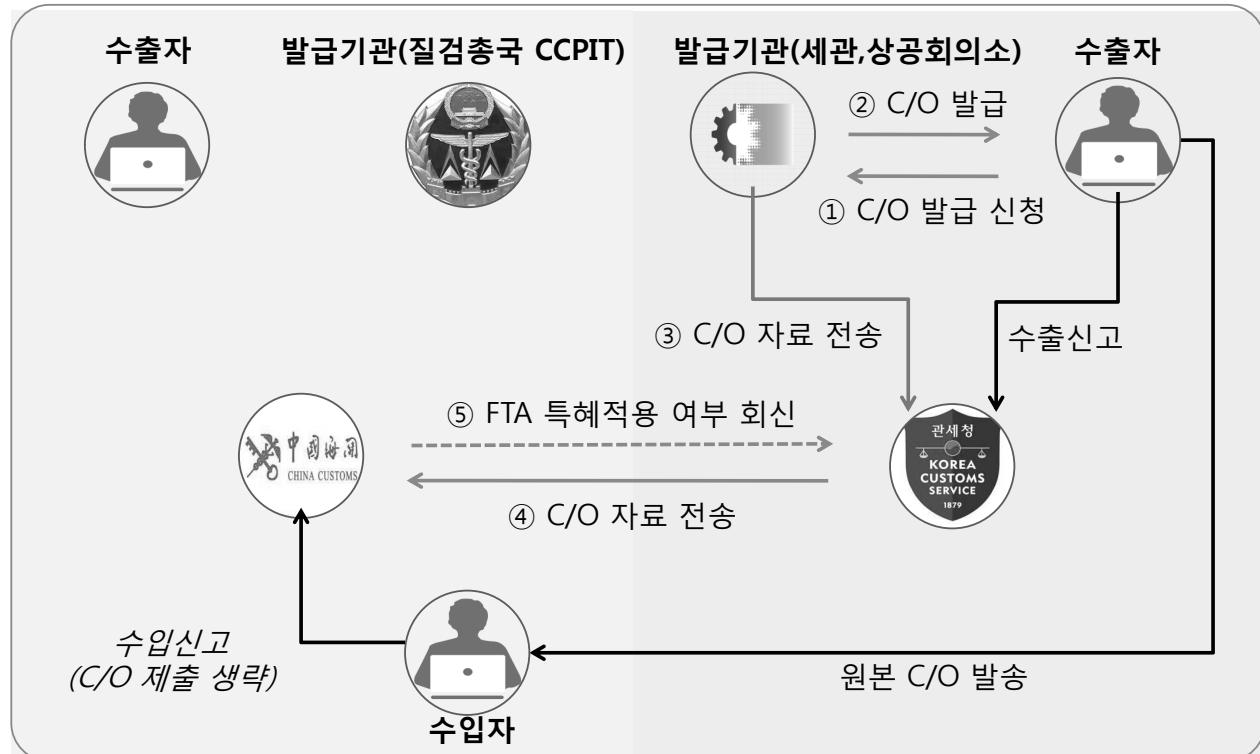
약어 : CCPIT

대외무역 진흥 및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 외국의 각종 형태의 경제,
기술협력 활동을 위해 1952 설립기관으로
회장, 부회장은 국무원에서 임명



상공회의소

Korea Customs Service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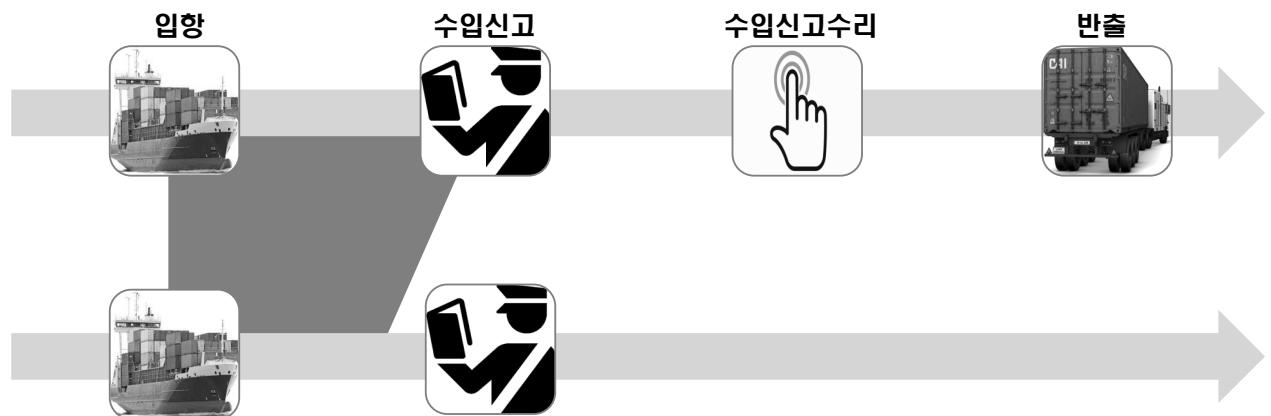


교환 내용

C/O	수출신고	수입국 피드백(실시간)	수입국 피드백(월별)
1) C/O 번호 2) 발급기관 3) 발급일자 4) 수출자 이름 5) 주소 6) 화주 이름 7) 주소 8) 생산자 이름 9) 주소 10) 출발일 11) 운송수단 번호 12) 선적항 13) 하역항 14) 비고정보 15) 물품의 연번 16) HS Code(6단위) 17) 상품명세 18) 포장의 수량 및 종류 19) 원산지 기준 20) 총 중량 및 수량 21) 수량(중량)의 단위 22) 송장 번호 23) 일자	24) 수출신고번호 25) 수출신고일자 26) 담당세관 27) 수량 28) 수량 단위	29) C/O 번호 30) 협정관세 적용 여부 31) 거부사유 32) 처리세관 33) 협정 적용 수량 34) 협정 적용 수량 단위	35) 발급기관 36) HS Code(6단위) 37) FTA 혜택 금액 38) FTA 적용 수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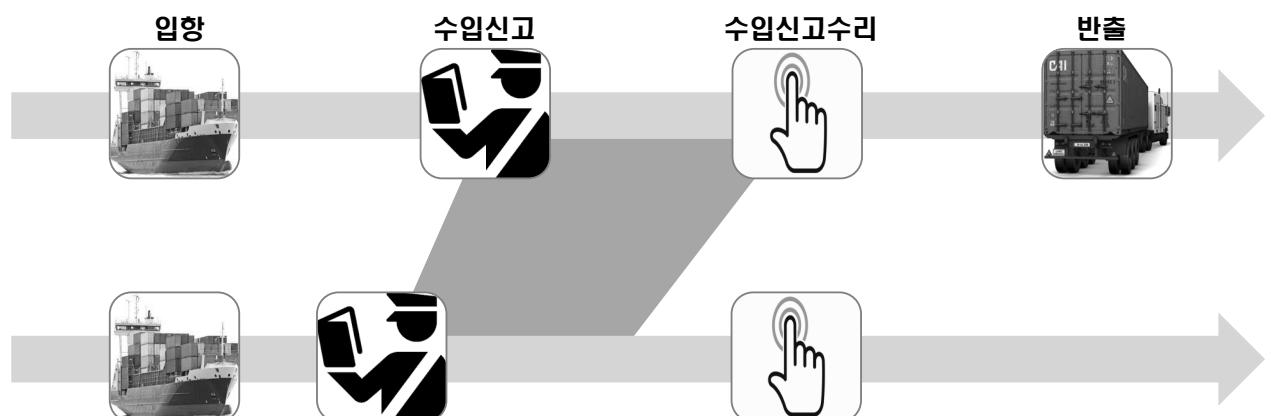
● 물류비용 절감 ●

[前] 입항 후 C/O 도착이 안된 경우, 통관보류 또는 보증금 납부 후 통관
 [後] C/O 제출 생략으로 입항 즉시 수입신고 가능



Korea Customs Service | 15

● 원산지 심사 간소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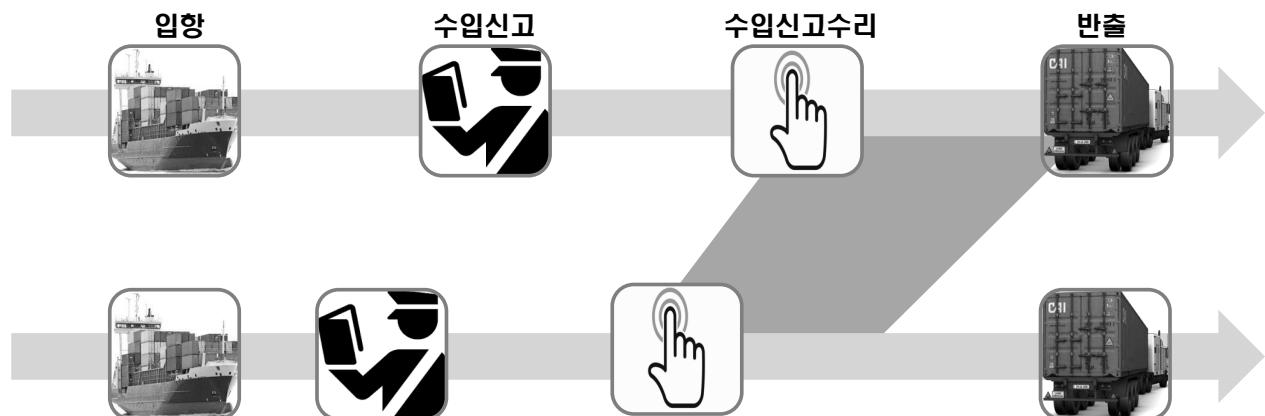
[前] C/O의 인장, 서명 등 형식적 요소 엄격 심사
 [後] 품명, 수량, HS 등만 간이확인 후 심사종결

Korea Customs Service | 16

■● 부정무역 방지 ●■

[前] EODES가 구축되지 않은 FTA 체결국간 다수의 위조 C/O 적발

[後] C/O 위조 가능성 원천 차단



Korea Customs Service | 17

■● C/O 제출 생략 ●■

PAPERLESS →

[수입통관 시] 수입심사자가 전산화면심사 중
C/O 원본 확인을 위해 서류심사로 전환하는 비중 감소

[사후신청 시] 협정관세적용 사후 신청 시에도
C/O 원본 생략 가능

Korea Customs Service | 18

● 중국측 검증 감소 ●



중국에서 우리측으로 검증의뢰 한 건 모두 C/O의 형식적 오류 관련

– 예) C/O 인장 불일치, C/O 양식 상이, 서명이 위조로 우려 등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시 검증 요청이 큰 폭으로 하락 예정

Korea Customs Service | 19

A circular logo with a dark center and a white border. Inside the center, the text "한-중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is written in white, stylized Korean characters.

Korea Customs Service | 20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 1항

기 체결된 FTA는 모두 기존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사용하나,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별지가 포함된 별도 양식을 사용

Korea Customs Service | 21

관세청 공고 제2016 - 49호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의 수정 공고

한-중 FTA 제3.27조(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에 따른 정보교환 이행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6. 3. 31.

관세청장

-아래-

1. 수정내용 :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연계를 위한 내용

- 가. 별지 제16호 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병지 추가
- 나. 별지 제17호 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 읊지 추가

2. 시행일

- 2016. 6. 1(수)

Korea Customs Service | 22

한-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서식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갑지)		(페이지번호/총페이지수)
①수입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②수입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전자주소)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번호) XXXXXXXXXX-9-99-9-99-9		
③수출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 (국가명) XX (성명) 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 XXXX		
④생산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 XXXX		
999란 ⑤신청일자 : YYYY/MM/DD ⑥원산지증명서류 종류 : [X] (1:원산지증명서, 2:사전설사서, 3:동종동질물품)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X] (1:기관, 2:자율(수출자), 3:자율(생산자), 4:자율(수입자)) ⑧원산지 : XX ⑨기관명 및 종류 : XXXXXXXXXXXXXXXXXXXXXXXXXX, [X] (1:국가기관, 2:상공회의소, 3:기타) ⑩발급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⑪발급일자 : YYYY/MM/DD ⑫총순중량 : 999,999.999 XXX ⑬적출국 : XX ⑭적출항 : XXXXXXXXXXXXXXXXXXXXXXXXXX ⑮출항일 : YYYY/MM/DD ⑯환적국 : XX ⑰환적항 : XXXXXXXXXXXXXXXXXXXXXXXXXX ⑱환적일 : YYYY/MM/DD ⑲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XX ⑳제3국 충물장 발급국가 : XX ⑳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⑳협정적용 순증량 : 999,999.999 XXX ⑳분할차수 : 999 ⑳HS부호 : 9999.99 ⑳협정관세율(구분) : 9.999.99(XX XXXX) ⑳원산지결정기준 : [X] (A:원천생산, B:세번변경, C:부가가치, D:조합기준, E:의회기공, F:기타, G:자율발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였기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을지)					
란번호	001란	002란	003란	004란	005란
⑤신청일자					
⑥원산지증명서류 종류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⑧원산지					
⑨기관명					
기관종류					
⑩발급번호					
⑪발급일자					
⑫총순증량					
⑬적출국					
⑭적출항					
⑮출항일					
⑯환적국					
⑰환적항					
⑱환적일					
⑲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					
⑳제3국 충물장 발급국가					
⑳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⑳협정적용 순증량					
⑳분할차수					
⑳HS부호					
⑳협정관세율(구분)					
⑳원산지결정기준					

Korea Customs Service | 23

병지 작성의 목적

병지

㉗연번	수입 신고		원산지 증명서			
	㉘란	㉙규격	㉚발급번호	㉛행	㉜사용량(중수량)	㉝단위
99999	999	99	XXXXXXXXXXXXXX	20	9999999.999	XXX

1.

그간 중량단위로 수기 관리되던 C/O 잔량관리를
규격단위의 전자 관리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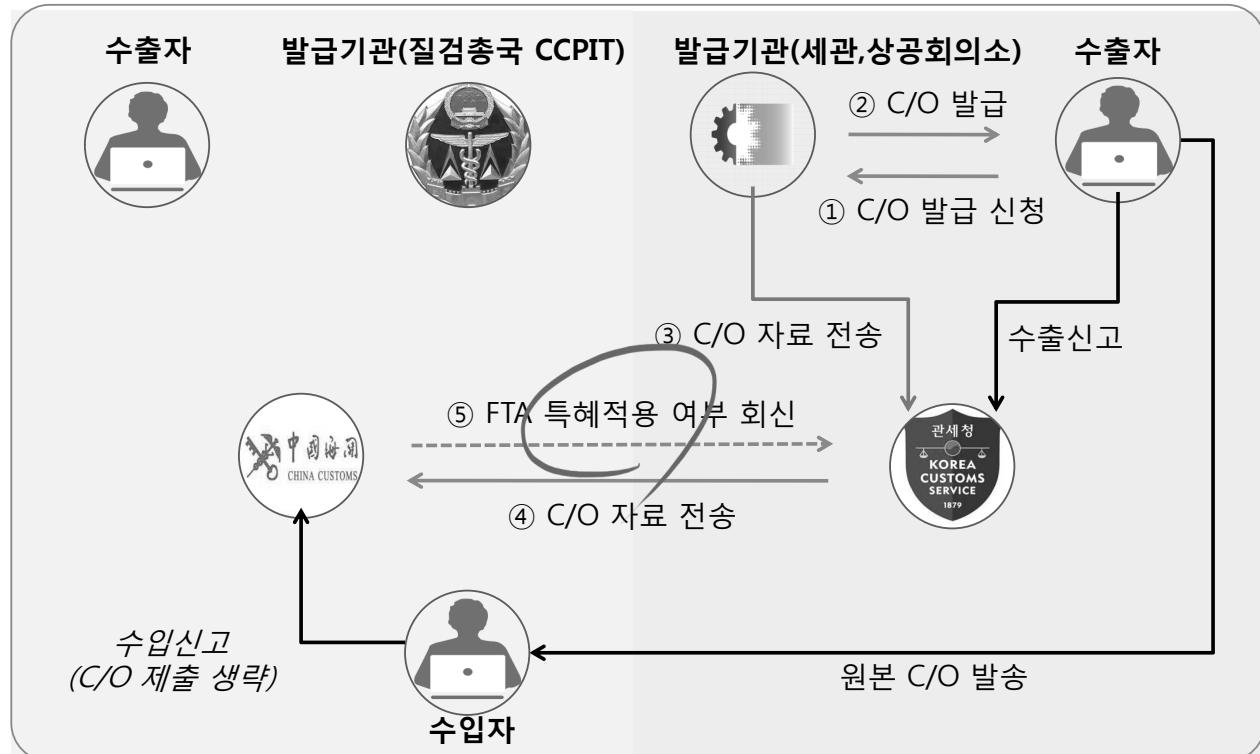
2.

EODES를 통한 한-중 FTA 특혜적용여부를 중국측에 피드백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한-중 FTA 체결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신청된 C/O별로 한-중 FTA 특혜적용여부가 중국측으로 통보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Korea Customs Service | 24



입력화면(예:이씨스)

● 적용신청서 작성화면 ●

The screenshot shows the 'DHR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한-중FTA용)' (Agreement Customs Preferential Treatment Application Form (Korea-China FTA)) application window. The window includes a toolbar with various buttons like '추가' (Add), '삭제' (Delete), '수정' (Modify), '저장' (Save), '복사' (Copy), '송신' (Send), '출력' (Print), 'Excel', '자동정정' (Automatic Correction), '정정신청' (Correction Application), '오류통보' (Error Report), and '종료' (Exit). The main area displays a table of application records:

신청일자	제출번호	신청일자	수입신고일	수입자	수출자	보관	준비
2016/05/02	2016/06/01	2016/05/27	2016/05/24			정상	
2016-000028							
오류	2016-000015	2016/06/01	2016/03/29			정상	
접수	2016-000016	2016/06/01	2016/03/29			정상	

입력화면(예: 이씨스)

적용신청서 작성화면

■ DHR - 협정관세적용신청서(한-중FTA용)

신청서(관리) | 신청서(화면1) | 신청서(화면2) | 매핑정보(수입-C/O)(한-중FTA용) |

수입제출번호 81689 | 2016 | 000016 | USER ID KCW | 작업일자 2016/05/24 | 협정구분 DHR |

수입신고번호 81689-16-000016-M_ | 수입신고일 2016/03/29 |

송신구분 9 | 신청일자 2016/06/01 |

수입자 hhi | 우편번호 44032 |

상호 |

기본주소 |

상세주소 |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0522022558 | 팩스번호 0522021234 |

도로명주소 311702011001 | 건물관리번호 3117010300100000000005466 | 국가명 CN |

수출자 COOPERSURGICAL INC. |

성명 EXPORT NAME |

주소 EXPORT ADDRESS |

전화번호 0212345213 | 팩스번호 0215423545 |

생산자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도움말 |

Korea Customs Service | 27

입력화면(예: 이씨스)

적용신청서 작성화면

■ DHR - 협정관세적용신청서(한-중FTA용)

신청서(관리) | 신청서(화면1) | 신청서(화면2) | 매핑정보(수입-C/O)(한-중FTA용) |

NO	란번호	세번부호	세종	세율	발급기관	발급번호
1	1	902219	FCN1	0	CUSTOMS OF CHINA	H334333333

수입신고번호 1 | NO. 1 |

원산지증명서류 1 [1:원산지증명서, 2:사전심사서, 3:동종동질제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제품]

발급자 1 [1.기관, 2.자율(수출자), 3.자율(생산자), 4.자율(수입자)] | 원산지 CN |

발급기관 CUSTOMS OF CHINA | 기관종류 1 |

발급번호 H334333333 | 발급일 2016/01/01 |

적출국 CN | 적출항 SANGHA | 출항일 2016/03/15 |

환적국 | 환적항 | 환적일 ----/----/-- |

C/O의 순총량 100,000.0 | 연결원산지증명 발급국가 |

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세번부호 9022.19 | 협정관세구분 FCN1 | 협정관세율 0.00 | 원산지결정기준 C |

협정적용순총량 57,500.0 | 분할수입 N | 분할차수 |

도움말 |

Korea Customs Service | 28

입력화면(예: 이씨스)

적용신청서 작성화면

DHR - 협정관세적용신청서(한-중FTA용)

NO	수입관NO	수입규격NO	C/O발급번호	C/O행번호	사용량	단위
1	1	1	123121221	1	111221	EA
2	1	2	41232321132	2	146113	EA

수입신고 관번호: 1 NO.: 1
 수입신고 규격번호: 1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123121221
 원산지증명서 행번호: 1
 사용량: 111,221.000 EA

규격정보
가져오기

추가 수정 삭제 저장

도움말

Korea Customs Service | 29

입력화면(이씨스)

정정신청서 작성화면

DHS - 협정관세적용신청 정정신청서(한-중FTA용)

선택조건	신청일자	2016/06/01	2016/06/01	&	신고번호	16000016	조회			
상태	신고번호	정정차수	신청일자	수리일자	수입자	세관과	보관	준비	변환	정정항목
오류	81689-16-000016-M	1	2016/04/23			041-10	정상	0	7	8

정정통항목수: 8
 신청구분: U X X
 정정신청사유: 승인번호 오기개

신청일자: 2016/04/23
 정정차수: 1

도움말

Korea Customs Service | 30

입력화면(예: 이씨스)

정정신청서 작성화면

DHS - 협정관세적용신청 정정신청서(한-중FTA용)

신청서(관리) [화면1] 신청(Detail)

제출번호	81689-16-000016-M	신청일자	2016/04/23	신청차수	1
수리일자	----/----/----	협정구분	DHR		
송신구분	9 [9:최초전송, 35:재전송]	세관/과	041	10	11
신청인	<input type="text"/> 상호 성명 수입자 상호 성명				
정정사유	승인번호 오기개				
정정총항목수	8	매핑정정여부	C [C:매핑정정, X:해당없음]		
란정정여부	<input type="checkbox"/> [U:란정정, X:해당없음]	매핑삭제여부	X [R:매핑삭제, X:해당없음]		
란삭제여부	<input type="checkbox"/> [D:란삭제, X:해당없음]	매핑추가여부	X [A:매핑추가, X:해당없음]		
란추가여부	<input type="checkbox"/> [I:란추가, X:해당없음]				

도움말 User HHI 2016/03/29

Korea Customs Service | 31

입력화면(예: 이씨스)

정정신청서 작성화면

DHS - 협정관세적용신청 정정신청서(한-중FTA용)

신청서(관리) | 화면1 | 신청(Detail)

NO	란NO	항목	항목명	정정 전 내용	정정 후 내용
1	0 04B	수출자명		EXPORT NAME	EXPORT NAME 1111
2	0 04C	수출자 주소		EXPORT ADDRESS	EXPORT ADDRESS 123456789/12345678
3	1 20B	협정관세율	0		8
4	1 11E	협정관세신청서발급번호	H334333333		H334333333-1
5	0 41	원산지증명서발행번호(원산지)	H334333333		H334333333-1
6	0 43	사용량(원산지)	100		110
7	0 41	원산지증명서발행번호(원산지)	H334333333		H334333333-1
8	0 42	원산지증명서행번호(원)	02		03

항목번호: 41 원산지증명서발행번호(원산지) NO: 5 란추가(991)/삭제(990)구분:
 란번호: 0 수입신고서의 란번호: 1 수입신고서의 규격번호: 1
 정정 전 내용: H334333333
 정정 후 내용: H334333333-1

도움말 User HHI 2016/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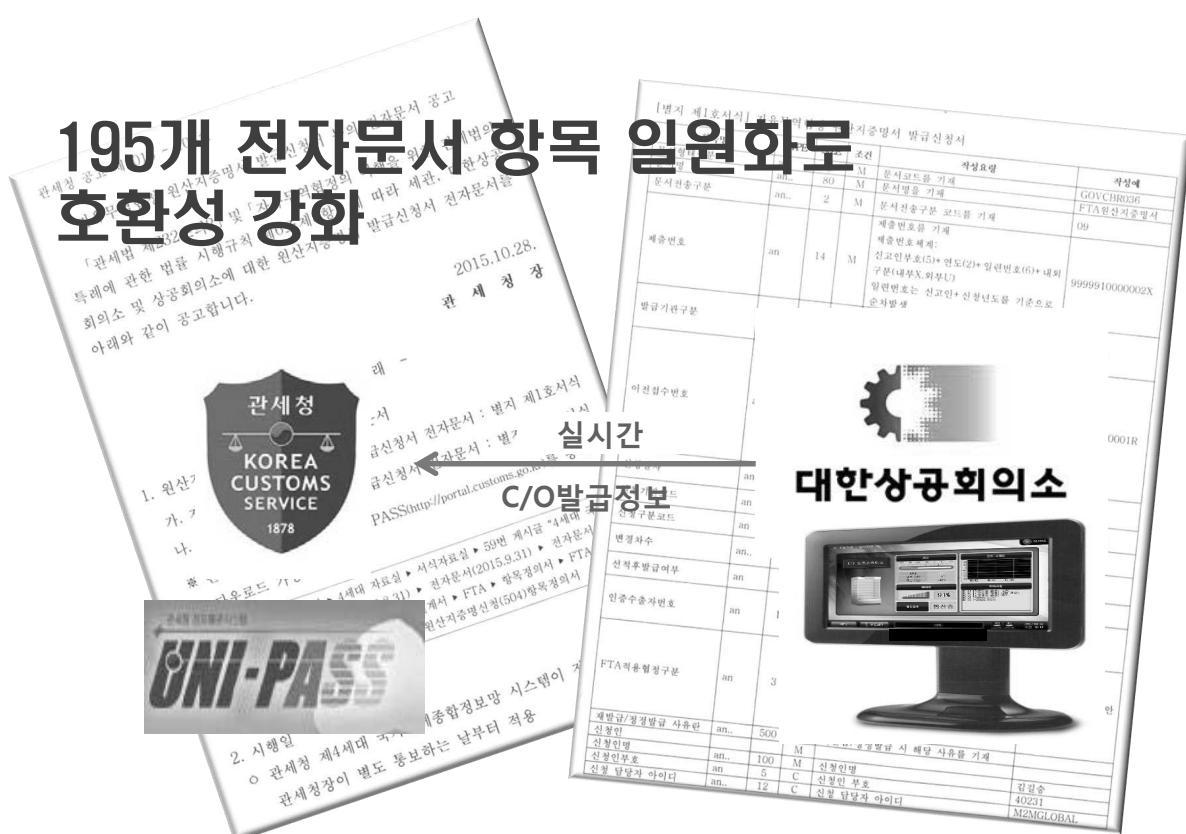
Korea Customs Service | 32

C/O 발급기관간(관세청-대한상의) 협업

✓ C/O 발급현황을 실시간 교환 체계 미비



Korea Customs Service | 33



Korea Customs Service | 34

■● 자료교환 개시 ●■

16.7.1. 원산지자료교환 개시

- 16.8월 기준, 1월분부터
총 401,879건 교환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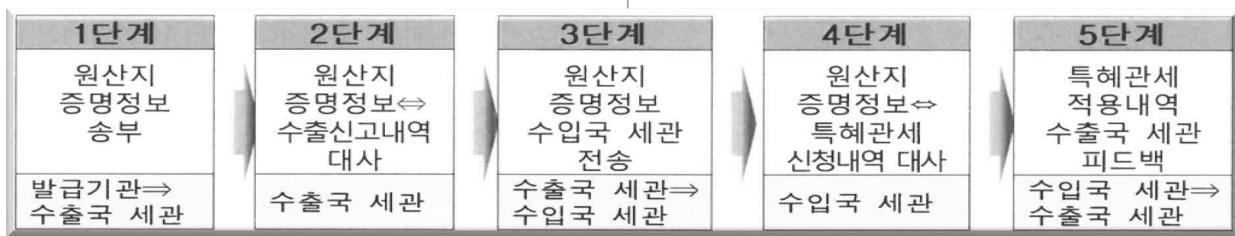
한중FTA 원산지증명 절차 빨라진다…자료 전자교환 실시
기사입력 2016/07/01 09:38 송고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려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중국과 '원산지 정보 자료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Korea Customs Service | 35

■● 자료교환 진행경과 ●■

향후 계획 등

중국 제2단계 원산지자료교환 개시(10.1~)

- ✓ 원본 c/o와 Data 일치 확인을 거쳐 FTA 특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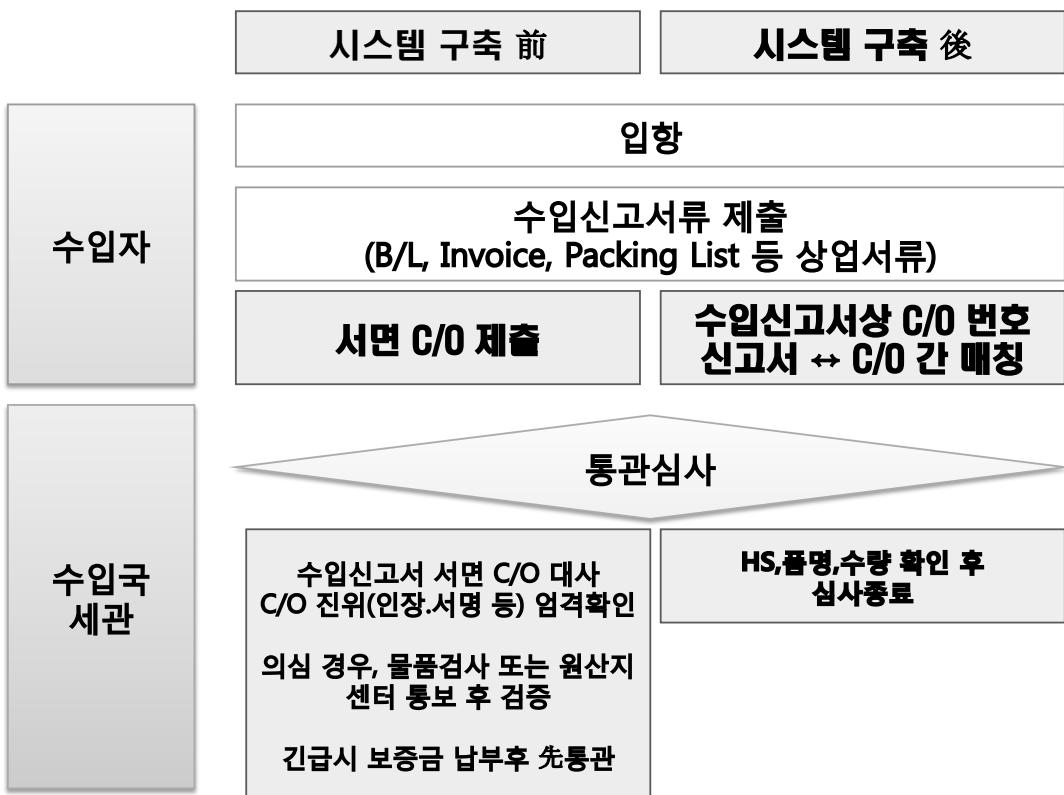
중국 제3단계 원산지자료교환 시행 예정(16.12.20~)

- ✓ Data만으로 FTA 특혜 적용

자료전송 확인 사이트 운영(11월~, 예정)

1. 韓 → 中 EODES 전송여부
2. 中 → 韩 EODES 전송여부
3. 한국 발급기관 발행여부 조회
4. 중국 발급기관 발행여부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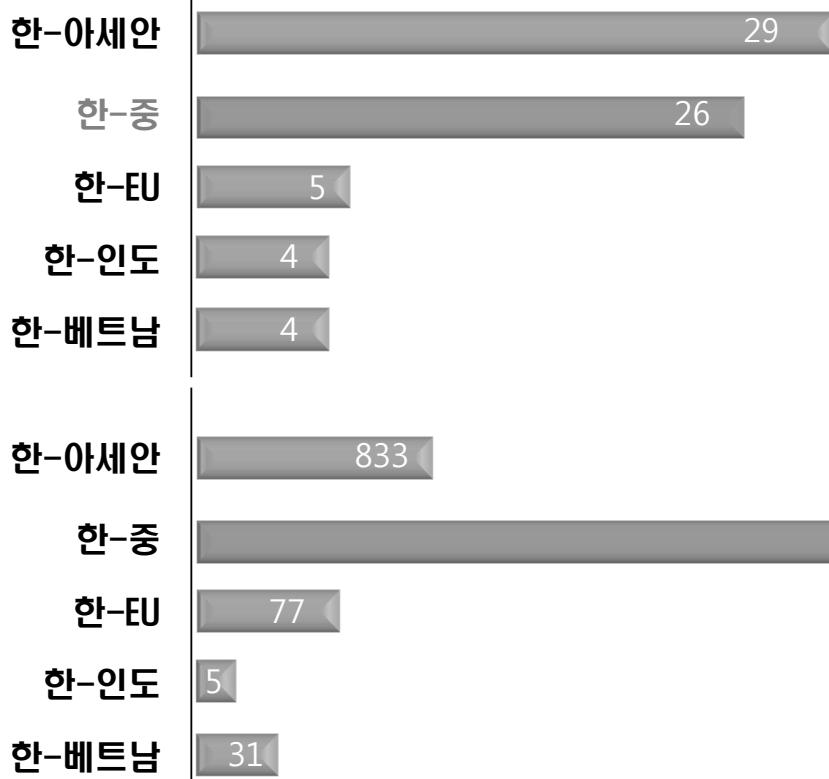
Korea Customs Service | 36



Korea Customs Service | 37

한-중 FTA
통관 애로
해결 방안

Korea Customs Service | 38

건수기준
(단위:건)금액기준
(단위:백만원)

Korea Customs Service | 39

중국발 통관애로의 비중



2016년 9월 누계

건수 기준 **38.2%**금액 기준 **79.1%**로

발생하는 FTA 통관애로의 대부분 차지

Korea Customs Service | 40

주요 키워드

稅 收 確 保

3.

자국 수출물품이 FTA 특혜적용을
받느냐 보다, C/O 위조 등
부정적 방법으로 FTA 특혜를 적용 받아
관세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가장 우려 (부당특혜 방지)

한-중 간 HS 6단위 불일치 시 우선 고 세율의 HS로
분류하려는 성향이 강한 편으로 통관애로 발생

C/O 위조 확인을 위해 C/O의 양식, 인장, 서명 등
C/O 형식적 요건의 꼼꼼한 심사로 통관 지체

Korea Customs Service | 41

통관애로 발생시 조치요령

Tip 1.

사실(Fact) 을 확인하라

중국은 수출입통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내용을 잘 인지
못하는 경향이 많음

무조건 상대편의 통관애로를 그대로 문의하는 대신
가급적 서류, 예컨대 수출입신고서, C/O 발급신청서, C/O 발급거부시
거부 메시지 등 관련 서류를 받아서 사실을 우선 확인

Korea Customs Service | 42

Tip 2.

6하 원칙에 따라 진술하라

세관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내용은 관세청으로 전달되는 데
중국해관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처리가 지연

**중국해관에 협조레터를 보내 요청해야 할 경우
중국해관 입장에서 6하 원칙에 따라 진술해야 함**

예) 0.00일 00번 또는 c/o번호 000호로 수출한 화물이
중국 00해관에서 c/o 발급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통관이 안된다

Korea Customs Service | 43

Tip 3.

애로 해소 채널을 단일화 하라

A사가 통관애로 발생시 산업부, 무역협회, 관세청 해외 파견관, 관할
세관 등 여러 경로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결국 돌고 돌아 2달 후
관세청으로 전달된 사례도 발생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싶겠지만,
중국내 통관문제는 결국 관세청에서만 해결 가능
국내에서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중국에서는 관세관과 차이나협력관(천진, 대련 지역)을 통해
즉시 처리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

Korea Customs Service | 44



Korea Customs Service | 45

감사합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정재호 사무관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국제원산지세미나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